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2010.6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2010. 6

연구수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식 (통계개발원)

선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개발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II.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	11
1. 여성경제활동 특성과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	13
2.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	17
III.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정책 현황	25
1. 보육정책	27
2. 휴가정책	35
3. 노동시간정책	41
4. 가족친화정책	43
5. 여성인력정책	44
IV. 외국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지표	47
1. 생활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 EQLS, EWCS, ESWT	49
2. EU :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	54
3. OECD : Babies and Bosses 시리즈	59
4. OECD : Family database	64
5. 호주 : 호주인의 일과 생활지수	68
6. 영국 :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71
7. 일본 : 『雇用均等基本調査』	75

V.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영역 및 지표	79
1. 주요 영역의 구성	81
2. 영역별 지표 구성	88
VI. 일·가정양립정책 영역별 필요통계 생산 방안	107
1. 일·가정양립정책의 통계연계성 검토 결과	109
2. 필요통계의 생산가능성 검토 결과	127
VII. 결 론	137
1. 연구의 요약	139
2. 미생산 필요통계 생산을 위한 개선 방안	143
■ 부 록	151

표 목 차

<표 II-1> 아동돌봄 제공자(어머니)의 취업중단 시기	16
<표 II-2> 여성취업 장애요인	16
<표 III-1>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28
<표 III-2>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2010)	29
<표 III-3>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료 지원(2008)	30
<표 III-4>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33
<표 III-5>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34
<표 III-6> 산전후휴가 사용인원과 급여 지급액	36
<표 III-7> 육아휴직 사용인원과 급여 지급액	37
<표 III-8> 성별 육아휴직 사용(2003-2008)	38
<표 III-9> 유연근무제의 형태	41
<표 III-10> 가족친화지수의 구성	43
<표 III-11> 여성일자리 변화와 취업유지 및 경력단절 기간(30-54세 여성)	45
<표 IV-1> EFILWC 에서 개발된 관련지표	53
<표 IV-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의 관련지표	57
<표 IV-3>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여성고용율(15-64세, 2005)	60
<표 IV-4> OECD 국가의 보육시설 이용율(2005)	62
<표 IV-5> OECD에서 개발된 관련지표	63
<표 IV-6> OECD Family database 의 관련지표	67
<표 IV-7> ‘호주인의 일과 생활지수’ 조사 항목	69
<표 IV-8> 『2009년 호주 사회 동향』의 관련 지표	70
<표 IV-9> 1차 WLB 조사의 주요내용	72
<표 IV-10> 3차 WLB 조사의 주요내용	73
<표 IV-11> 일본 「雇用均等基本調査」(2008)의 관련지표	76
<표 V-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의 관련정책	82

<표 V-2>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의 관련정책	83
<표 V-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의 관련정책	84
<표 V-4> 보육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90
<표 V-5> 휴가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92
<표 V-6> 노동시간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93
<표 V-7> 가족친화정책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95
<표 V-8> 여성인력정책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97
<표 V-9> 지표체계와 정책 연계성 검토결과	99
<표 VI-1> 필요통계의 작성항목별 생산가능성 검토 결과	130
<표 VII-1> 필요통계의 작성항목별 신규통계	144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9
<그림 II-1>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14
<그림 II-2>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15
<그림 II-3>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	23
<그림 III-1> 직장보육시설 설치방법	32
<그림 III-2> 우리나라 근로자의 자녀양육현황	35
<그림 III-3>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제도 사용현황	40
<그림 III-4>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정책 사용현황	42
<그림 III-5>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주요 시간사용	44
<그림 IV-1> EU 국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51
<그림 IV-2> EU 국가의 성별 자녀양육시간	52
<그림 IV-3> 자녀수 및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25~49세, 2006)	56
<그림 IV-4> OECD 국가 남녀의 1일 평균 통근시간	65
<그림 IV-5> 호주 부모의 시간압박에 대한 인식	71
<그림 IV-6>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	74
<그림 IV-7>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율 변화(2000-2007)	74
<그림 IV-8> 일본의 남녀 육아휴직자의 복직 및 퇴직 현황	75
<그림 V-1> 3개 부처의 일·가정양립 관련정책	87
<그림 V-2>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영역	8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 2003년 49.0%, 2005년 50.1%, 2006년 50.3%, 2007년 50.2%, 2008년 50.0%로 지속적으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08). 이같이 10여년에 걸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이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전체 여성의 2/3가 일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1.7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다(OECD, 2007).

한편 유럽사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활성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노동력으로 여성노동력이 지적되고 있다. EU 리스본 전략(2006), 매킨지 보고서(2004) 등에서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전략을 동반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여성노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은 여성 개인의 경제적 욕구, 자아실현의 가치관 변화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가족 역시 종래의 남성부양자가족의 형태에서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차 맞벌이가구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정책아젠다로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가정양립정책(Work-Family Balance Policy)”은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여성근로자만이 아니라 남성근로자 역시 해당된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다

4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양한 노동시간정책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제도적 지원과 함께 가족 내에서는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하여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조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일·생활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을 1980년대부터 이미 발전시켜온 반면, 우리나라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1년 「근로기준법」, 「여성발전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사문화되어 있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새롭게 제도를 부활시키게 되었다. 이후 2007년 「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화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같은 해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동안 정부는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확산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을 촉진하는 가족친화정책,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통한 노동시간정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가정양립정책 분야에서는 필요통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이 극히 최근의 정책영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도 있지만 정책영역 자체가 보육정책,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등의 다양한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통계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작업이 더욱 어려웠던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정책의 성격상 관련부처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며, 세부영역에 따라서는 부처간 협력을 요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세부영역들을 일·가정양립정책이라는 범주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관련정책의 성별분리 통계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영역별로 정책수립의 기초작업으로 다양한 성별통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을 성별로 분석함으로써 어느 시기에 어느 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성별 육아휴직 사용율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이용의 성간의 차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입 지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는 관련 영역에서의 남녀의 차이와 남녀의 위치 및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우선 수요집단을 정의하거나 정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영역별 대상집단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성별통계 자료의 구축과 정비작업은 일·가정양립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관련정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의 개선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주요내용은 일·가정양립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며, 나아가서 정책분석을 통하여 구성된 관련 통계자료의 통계생산 가능성 검토함으로써 일·가정양립정책 관련분야의 전반적인 통계생산 절차와 체계에 대한 개선 및 개발방안을 제안하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성·가족 정책분야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통계의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정책연계 통계생산 방안이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에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관련부처의 담당자간 공조를 통하여 여성·가족 정책현장에서 필요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일·가정양립정책의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 범주와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현황 및 관련지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구성된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통계자료들의 생산방안을 주요 영역별로 검토한다. 즉 선정된 지표의 생산가능성을 검토하여 통계생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셋째, 향후 일·가정양립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통계체계를 파악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기초통계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통계를 보완하고 미생산 지표의 생산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신규통계 생산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통계지표를 구성하며, 구성된 지표의 통계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과 통계의 연계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통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책특성과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은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여성인력정책, 가족친화정책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셋째, 정책관련 지표개발을 위하여 외국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OECD, EU 등에서 최근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고, 국가별 사례로는 호주, 일본, 영국 등을 검토한다.

넷째,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영역 및 지표를 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

반으로 주요영역을 구성하며, 영역별 세부지표를 구성한다.

다섯째, 일·가정양립정책 영역별 필요통계의 생산방안을 검토한다. 구성된 필요통계를 기존 통계와 연계하여 생산가능성을 검토하고, 미생산된 지표의 생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일·가정양립정책의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최근의 정책동향과 정책특성을 분석하였다. OECD와 EU의 관련자료를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여 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Eurosta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다양한 조사와 보고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 등이다. 또한 국가별 사례로 호주, 일본, 영국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의 최근 동향, 정책추진의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나. 관련부처의 정책 분석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정책의 세부 지표 구성을 위하여 각 부처의 정책과제들을 검토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정책 특성 및 하위범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노동부의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다. 구성된 지표의 통계 생산방안 검토

관련부처의 정책분석을 통하여 구성된 지표의 통계 생산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영역별로 구성된 필요통계를 정책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관련하여 활용도 및 작성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라. 필요통계의 개선 및 개발방안 제언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통계지표들을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지표와 검토함으로써 이들 필요통계의 개선 및 개발방안을 제언하였다.

마.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

정책분석과 외국 지표분석을 통해 구성된 일·가정양립정책 지표체계를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관련부처에서는 연구진에 의해 구성된 지표에 대한 통계생산 가능성, 정책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부처에서 필요한 새로운 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표의 구성과 생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II.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

1. 여성경제활동 특성과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
2.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

1. 여성경제활동 특성과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 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63.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2006년)로서, OECD 평균인 82.5%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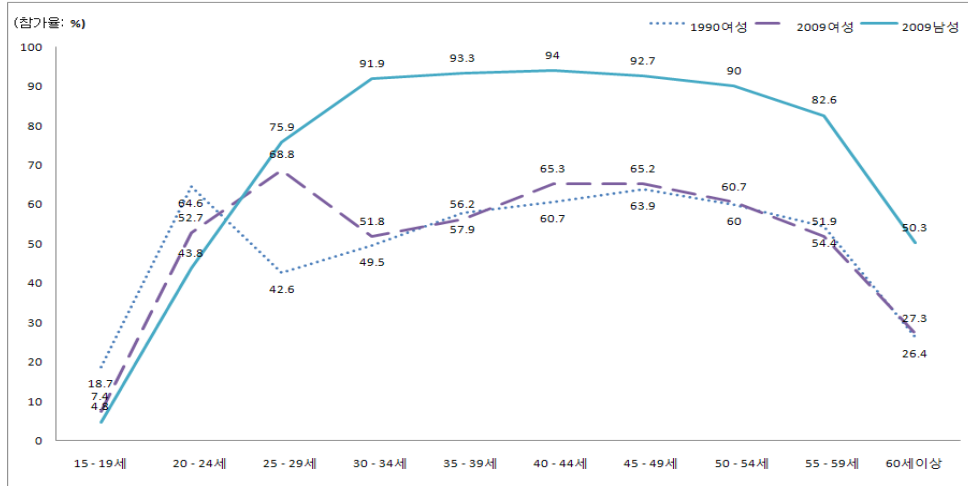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연령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저조한 시기는 만 30-44세 연령대 여성들인데, 이들은 주로 자녀양육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낮아서 해당 연령대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5세-29세, 30-34세, 35-39세 연령대에서 극히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여성의 생애주기상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시기이다.

1990년과 2009년의 경제활동 특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역 U자 곡선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M자 곡선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M의 함몰부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상당정도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출산 및 양육의 과정과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한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현상과도 연관되어 여성들의 출산 연기, 소자녀 출산, 출산 포기 등의 현실이 그 이면에 담겨있기도 하다.

둘째, 함몰지점의 연령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함몰지점은 1990년에는 25세-29세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30-34세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의 시기도 연령대가 높아졌으며,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등의 과정도 이전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14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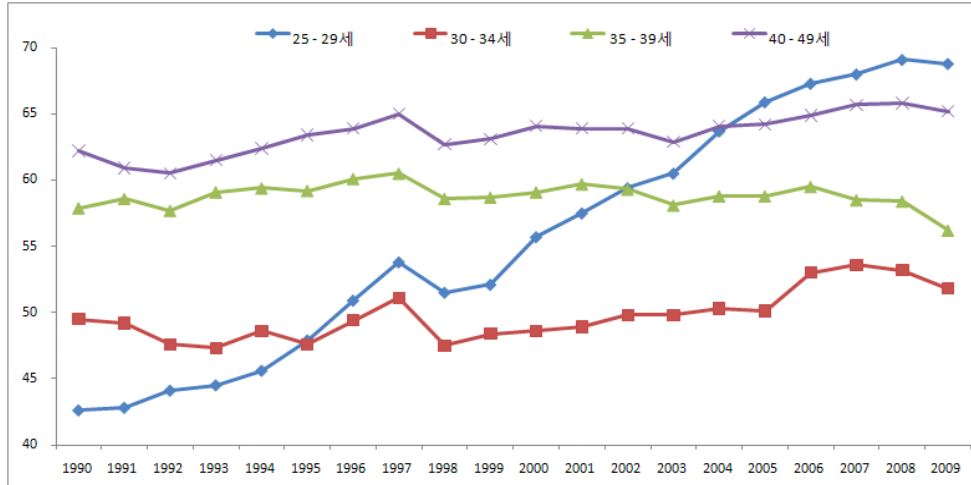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그림 II-1〉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셋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자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의 취업중단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 경제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출산, 육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은 여성취업의 불연속성이나 짧은 취업경력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내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여성의 취업단절, 경력불안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인적자본에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가족역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 것이다(김영옥 외, 2007).

한편,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35-39세, 40-49세 연령집단에서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30-34세 연령집단에서는 최근에 와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참가 증가속도가 급격한 집단은 25-29세 연령집단으로서 이들은 대부분이 미혼여성 집단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난 20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집단은 대부분이 미혼여성 집단이었을 뿐, 대다수가 기혼여성

집단을 이루는 35세 이상 집단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그림 II-2〉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배제와 제한, 빈번한 노동단절 등 여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내 주변적, 제한적 지위를 초래하게 된다는 학자들의(Gornick & Meyers, 2003; Ackersberg, 1992)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1-9차)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일자리 이동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의 첫 번째 일자리 종료 후 두 번째 일자리 진입까지의 단절기간은 약 10.2년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은 주로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가족형성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09).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중단 시기를 살펴본 결과, 결혼 전(35.8%), 첫째 자녀 출산 전(31.3%), 결혼 후(14.2%)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이 중요한 취업 중단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아동돌봄 제공자(어머니)의 취업중단 시기

구분	사례수	%
결혼 전	86	35.8
결혼 후	34	14.2
첫째 자녀 출산 전	75	31.3
첫째 자녀 출산 후	29	12.1
둘째 자녀 출산 전	6	2.5
둘째 자녀 출산 후	5	2.1
자녀와 상관없이 그만 두었음	5	2.1
계	240	100.0

자료: 장혜경, 홍승아 외(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은 육아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에 비해 2006년에는 그 부담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핵가족화가 훨씬 많이 진전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한데 따른 개별가족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2〉 여성취업 장애요인

사유	1998	2006
육아부담	29.3 %	45.9 %
사회적 편견과 관행	28.2 %	18.5 %
불평등한 근로여건	12.5 %	11.6 %
능력부족	14.3 %	5.9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해당연도

따라서 여성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특히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주요 영역

가.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

OECD(2002)의 정의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정책은 개인 및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들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양립은 부모역할, 노동시장 참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부모들이나 잠재적인 부모들은 그들이 원하는 양립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출산시기를 연기하든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든지,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선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양립이 가능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서비스 이용의 시간적 제약 등으로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전일제 아동양육을 선호하거나, 더 많이 일하고 싶어도 충분히 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속과 육아의 문제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Ruhm, 1998; Ronsen, 2004; Devander & Andersson, 2005; d'Addio & d'Ercole, 2005), 심지어 Gornick & Meyers(2003)는 이를 “child penalty”라고 명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없는 부모들보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Smeeding et al., 1999; Daly & Rake, 2003).

본 연구에서도 OECD의 정의를 따라 일가족양립정책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즉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들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는 노동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취업지속을 지원하는 것이며, 남성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바로 Esping-Andersen(2002)이 이야기하는 “젠더 계약”(Gender Contract)¹⁾의 실천형태를 의미한다.

일·가정양립정책의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노동시간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있다. 한편 제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하여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행을 변화시키는 문제까지 포함된다. 왜냐하면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노동시장 관행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일·가정양립정책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즉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중단하는 일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는 노동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동의 지속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성에게는 양육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아책임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대상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

1) “젠더 계약”이란 여성은 보다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남성은 가족 내 자녀양육 참여를 증가시켜 서로의 젠더역할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양성간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녀근로자”들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은 이들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시간 등의 가족지원을 확대시켜 주어 부모들의 가족생활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란 어린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남녀근로자, 그 외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남녀근로자 등이 모두 정책대상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서 한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침해하게 일가족양립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 퇴장, 노동 중단, 복직 등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방향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역할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의 취업지원의 성격으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부모(working parents)의 취업지원과 양육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을 넘어서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논의와 현실은 일·가정양립정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침해하게 일가족양립(일과 부모역할의 양립)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대상층이며, 정책지원 욕구가 가장 큰 유자녀 남녀근로자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이 개념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으로 요구될 것이다. 사실 “가족의 책임”이란 양육의 책임만이 아니라 노인의 부양, 그 외 다른 가족원의 유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발생하는 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생활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²⁾. 특히 일생활균형의 개념에서는 생애주기의 개념을 적용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이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Calnan,

2)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다(European Commission, 2005).

200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Calnan(2005)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인생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노동시간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 생애주기의 과정에 노동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은 가족생활에 요구되는 시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 훈련 및 교육의 시간, 자원봉사하는 시간 등을 인생전반에 걸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반하여 일·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이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이러한 생애주기관점이 통합된 일생활균형정책이 발달되고 있다(Krieger, 2007). 궁극적으로 일생활균형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하여 건강과 휴식, 지역사회활동, 학업 및 취미생활 등 개인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활동들을 일과 균형있게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일·가정양립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대상층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를 자녀양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으로 구성한다.

1) 보육정책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내 돌봄노동의 부담은 일가족양립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각국은 지난 2,30 여년간 보육시설 확충이나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등 가족내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보육정책 영역에서는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제공(accessibility),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접근성(affordability) 문제, 서비스 질(quality)의 문제 등이 중요한 정책 세부요소를 구성한다. 보육서비스의 제공량은 보육수요층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부모의 비용부담은 얼마나 완화되는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에 서비스의 질은 부모들과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지, 그리고 부모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부모의 근로시간대와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조응 등)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가별 보육인프라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가별 보육인프라 수준이 다양한 것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점, 성별분업 혹은 양육에 관한 해당사회의 사회문화적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인프라가 잘 제공되는 국가일수록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부모의 보육서비스(non-parental childcare)를 이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는 다양한 층위의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자녀보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보육비 지원은 국가에 따라서는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보육비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혹은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영국과 같이 일하는 부모들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보육방식에 상관없이, 즉 시설보육과 개별보육 방식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보육비용에 대한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2) 휴가정책

일반적으로 휴가정책은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childcare leave)으로 구분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를 통합하여 부모휴가(parental leave)로 제공하기도 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있으며 제도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기

간과 급여의 소득대체 수준, 급여의 자격, 부성휴가제도(paternity leave) 실시 여부, 휴가기간 동안 고용보호 규정 유무, 출산휴가 이용율 등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정책특성은 휴가기간 및 급여대체 등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휴가사용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권(choice)과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설계(부성휴가제도의 도입, 부모휴가내 남성할당제(daddy quota 도입 등)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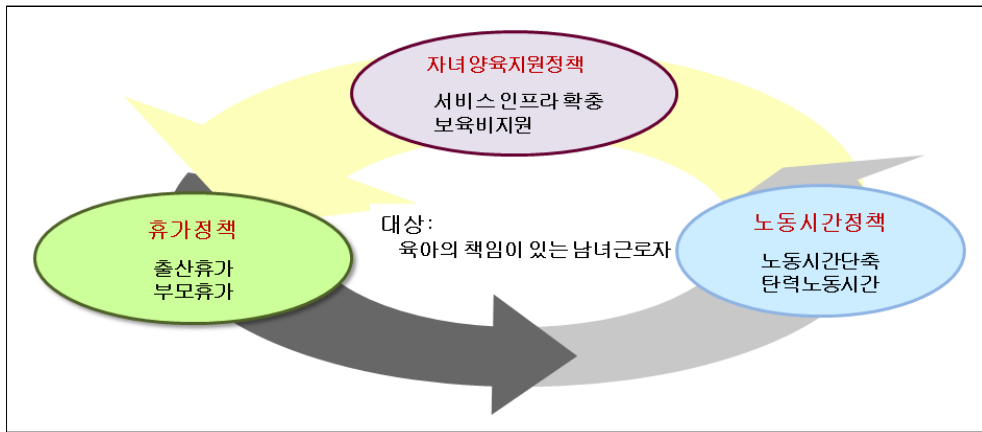
3) 노동시간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족생활, 가족시간의 절대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시장내 노동시간의 일정부분을 가족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적 노력, 사회적 노력,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정책은 매우 중요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일가족양립지원을 위한 노동시간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은 국가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전사회적으로 유급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여성 고용기회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남녀 모두 돌봄 참여와 같은 무급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의 일자리 공유(job sharing)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고용 창출을 통한 Combination Scenario 등은 그 예이다. 실제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의 노동시간 감축은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성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유연적 노동시간제도(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이다. 즉 일하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간제도로서, 파트타임 고용, 육아 등 돌봄노동이 필요한 시기 동안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 계약제(Annualized hours), 집중노동 시간제(Compressed hours), 학기간 근로(Term-time working), 한시적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계정제도(time-banking, saving hours accounts)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유연적 노동시간정책들이 여성에게만 집중된다면, 노동시장내 또하나의 여성 계토화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제도의 사용을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그림 II-3〉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

Ⅲ.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정책 현황

1. 보육정책
2. 휴가정책
3. 노동시간정책
4. 가족친화정책
5. 여성인력정책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핵가족, 맞벌이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의 사회적 지원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로 인한 우리사회의 저출산현상과 맞닿아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전에는 불과 1,919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은 2009년 현재 33,500 여개소로 확충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법」의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직장과 지역사회가 보다 일과 가족생활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경영 및 환경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7년에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20년이 경과되었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관련법 개정³⁾ 이후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친화정책, 여성의 경력단절방지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정책 등이 시작되었으며, 이들 제도가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의와 범주로 재구성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장에서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관련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관련 통계지표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 보육정책

가. 보육시설

한국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 이래 관련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3)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이전의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문화되어 있던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며, 2007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법」을 통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제도화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해 온 분야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주력을 기울인 반면,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보육정책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책 중에서 정책 지속성이 높고, 해당부처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영역이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는 크게 확충되었다. 보육서비스의 제공현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전체 보육시설은 35,550개이며, 국공립보육시설이 1,917개소, 민간보육시설 31,793개소, 직장보육시설 370개소 등이다. 즉 민간보육시설 제공율이 89.4%, 국공립보육시설 제공율이 5.4% 수준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제공율이 훨씬 높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11.0%, 민간보육시설 이용율이 77.8%이어서 여전히 민간서비스의 편중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기존의 시설활용 및 민간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시설 확충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Ⅲ-1〉 보육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계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시설수 (%)	1,917 (5.4)	1,470 (4.1)	31,793 (89.4)	935 (2.6)	13,433 (37.8)	66 (0.2)	17,359 (48.8)	370 (1.0)	35,550 (100.00)
아동수 (%)	129,656 (11.0)	112,338 (9.6)	914,261 (77.8)	52,718 (4.5)	622,996 (53.0)	1,465 (0.1)	236,892 (20.2)	18,794 (1.6)	1,175,049 (1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에서 재구성

보육정책은 정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정부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인 보육료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정책은 2002년부터 자산조사에 기반한 보육료지원으로 시작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에 연계시키되 소득계층별로 지원폭을 달리 구성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자산조사 방식도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에 기반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간소화하였다. 2010년 3월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소득하위 6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60%를, 70% 이하에서는 30%를 지원함으로써 지원폭을 확대하였다.

〈표 Ⅲ-2〉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2010)

(단위: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정부지원금액
차등보육료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보육료전액지원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소득하위 50-60% 이하	정부지원단가의 60% 지원	
	소득하위 60-70% 이하	정부지원단가의 30%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소득하위 60% 이하	정부지원단가의 40% 추가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지원단가의 70% 추가지원	
만5세아보육료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보육료전액지원 (172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만12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보육료전액지원 (383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소득안정시 부부의 근로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 반영	최소 52천원 - 최대 172천원	

* 2010.3월부터 출생순위상 둘째이상 아동으로 확대함(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2010.3월부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지침』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이용율과 보육료 지원 수혜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체 만 0세-만 5세 영유아수는 2,744,597명인데, 이들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99,304명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은 40.1%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료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는 572,881명으로 보육료 지원 수혜율은 52.1%이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절반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면 보육료지원 수혜율은 20.9%로 나타나 여전히 약 4/5의 영유아가 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료 지원(2008)

구분	전체 영유아수 ¹⁾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이용아수 ²⁾	시설 이용율	보육료 지원아수 ²⁾	보육료 지원율
만 0세	446,738	99,245	22.2	53,072	53.5
만 1세	445,796	160,320	36.0	99,423	62.0
만 2세	438,576	242,324	55.3	152,076	62.8
만 3세	448,625	229,424	51.1	144,917	63.2
만 4세	475,449	192,668	40.5	123,015	63.8
만 5세	489,413	175,323	35.8	378 ³⁾	0.2
만 0~5세	2,744,597	1,099,304	40.1	572,881	52.1

자료: 1) 통계청, 장애인구특별추계
 2)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2009.3)
 3) 원자료에서 5세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보육시설의 설립추세에 기반해 본다면, 보육이용율과 보육비지원 대상층은 계속 확대되어오기는 하였지만, 확대된 서비스 공급에 비해 서비스 이용율은 공급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적인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질적인 요구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 서비스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

지만 전체 아동의 절반미만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보육이용율이 70-80% 이상인 서구유럽과 비교하면 아직 보편적 서비스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에 비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부분은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여 보육서비스의 적절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조사연구에서는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이 출산휴가후 3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으며, 그 중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37.3%), “직장과 육아 병행곤란”(34.3%) 등의 이유이다(여성가족부, 2006).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한 취업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인 요건인데, 여전히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충분히, 적절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⁴⁾.

나. 직장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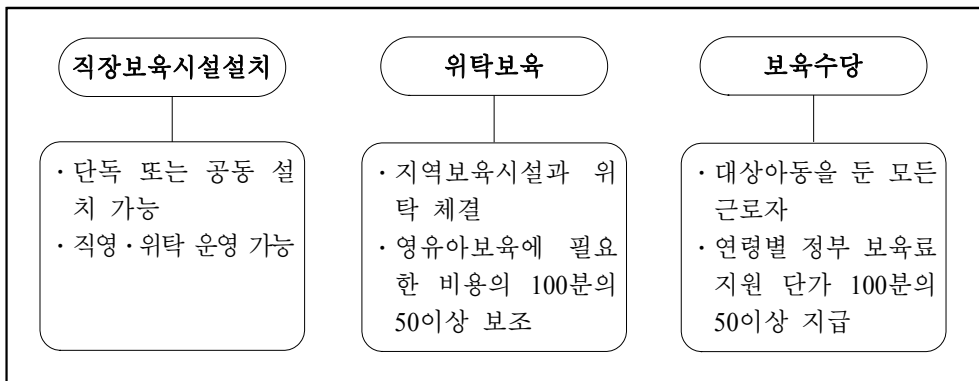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부모를 위한 특화된 보육서비스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요구와 이의 당위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제공은 기업차원에서는 인력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경영목표가 될 것이므로 보육정책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은 수요자들의 욕구는 매우 높는데 반해 공급현황은 매우 저조한 보육형태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모가 가장 원하거나 도움이 되는 보육지원제도로 꼽고 있으며(59.1%)(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

4) 이러한 현실은 가장 최근까지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육아휴직후 보육시설의 시간제약(부모의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맞지 않음), 도우미 고용비용의 부담 등으로 부부가 임시별거를 하는 형태로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여 여전히 보육서비스 이용의 현실적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경향신문, 2008.10.17).

은 시설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9). 이는 직장보육시설이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민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부모의 근로시간대에 맞춘 운영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체 보육인프라 중 직장보육이 담당해야 할 비중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기업의 인식개선과 함께 사회전반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제14조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사업주의 비용보조에 관한 벌칙조항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장보육서비스 이행방법은 단독 또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육시설과 위탁체결을 함으로써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보육수당(정부 보육료지원단가 100분의 50이상 지급)을 제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

〈그림 Ⅲ-1〉 직장보육시설 설치방법

2009년 6월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563개소, 의무이행율은 51.7%로 보고되고 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의 설치는 28.9%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직장보육발전 T/F”를 구성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적정규모, 관리체계, 투자재원 분담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직장보육지원센터).

〈표 Ⅲ-4〉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구분	설치의무사업장 (상시 여성 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						
	계 (A+B+C+D)	의무이행 (A+B+C)	보육시설 설치(A)	보육수당 지급(B)	위탁보육 (C)	미설치 (D)	임의 설치 사업장
2005	563(100)	155(27.5)	90(16)	44(7.8)	21(3.7)	408(72.5)	
2007	535(100)	231(43.2)	139(26.0)	58(10.8)	34(6.4)	304(56.8)	149
2008	533(100)	263(49.3)	149(28)	83(15.6)	31(5.8)	270(50.7)	155
2009. 6월	536(100)	277(51.7)	155(28.9)	93(17.4)	29(5.4)	259(48.3)	140

자료: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다. 아이돌보미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2006년부터 아이돌보미(in-home care service)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시간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의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아동양육자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 일시적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적 보육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이용대상은 만3개월-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이용자 가정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가정유형이 구분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형, 200% 이하의 나형, 200% 이상의 다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Ⅲ-5〉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이용요금 20% 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자료: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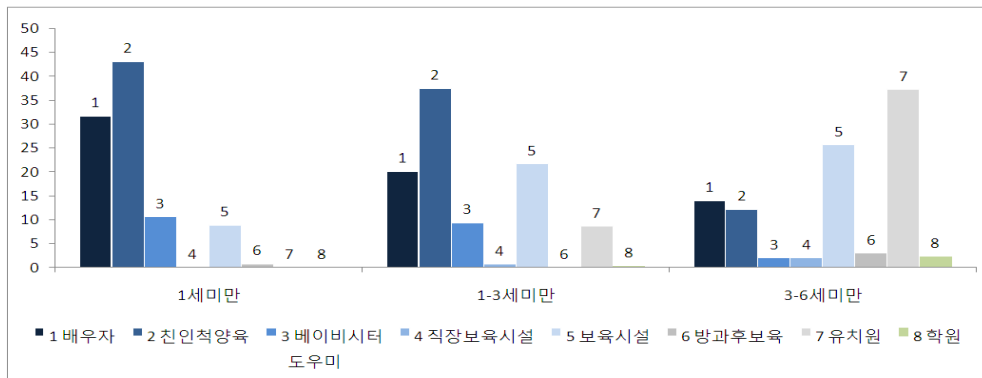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4개 지역(천안, 울산, 여수, 부산)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38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점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전국 65개 사업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수행기관 또한 다양해지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9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그 수요와 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007년 4개 자치구(동작, 서대문, 서초, 용산)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22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양육수당제도

한편 2009년 5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제도(월 10만원)가 도입되었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이고, 보육료 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만 0-1세 아동에게 우선 지원되

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5.4).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형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은 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적이고 시설보육보다는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친인척 양육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43.1%),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역시 친인척양육이 가장 많이 나타나(37.5%), 영아기 자녀의 주요한 양육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기(3-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37.2%)과 보육시설(25.7%)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13세 미만 아동은 학원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홍승아 외(2009)

〈그림 Ⅲ-2〉 우리나라 근로자의 자녀양육현황

2. 휴가정책

가. 출산휴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제도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있다.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출산전과 출산후의 기간 중 총 90일이 제공되는데 우선 지원대상 기업(건설업 300인, 제조업 500인,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상한 135만원)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6〉 산전후휴가 사용인원과 급여 지급액

연도	인원(명)	지급액(백만원)
2002	22,711	22,602
2003	32,133	33,522
2004	38,541	41,610
2005	41,104	46,041
2006	48,972	90,886
2007	58,368	132,412
2008	68,526	166,631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나.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1년이며, 유급휴가이기는 하지만 급여는 정액급여로 월 50만원이 제공된다⁵⁾.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지원금(월 20~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은 제도도입과 제도개선 등 제도화의 노력은 상당 수준 경주되었으나 실제 사용율은 높지 않다.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21.2%, 2004년 24.1%, 2005년 26%, 2006년 27.9%, 2007년 36.3%, 2008년 42.5%, 2009년 50.2% 수준이다. 사용 증가율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육아휴직 활성화

5) 이 금액은 2006년 월통상임금의 26.7%이며(노동부, 2008), 휴가기간의 소득대체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를 위한 제도적, 사회문화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더구나 이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근로자들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 중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로 볼 수는 없다. 특히나 거대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여성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할 때에는 아직 육아휴직제도는 사용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Ⅲ-7〉 육아휴직 사용인원과 급여 지급액

년도	육아휴직 인원 (명)	지급액 ¹⁾ (100만원)	1인당 월지급액 (만원)	산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비율(%)
2002	3,763	3,087	30	16.6
2003	6,816	10,576	30	21.2
2004	9,303	20,803	40	24.1
2005	10,700	28,242	40	26.0
2006	13,670	34,521	40	27.9
2007	21,185	60,989	50 ¹⁾	36.3
2008	29,145	98,431	50	42.5

주: ¹⁾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또한 휴가를 사용하는 대상층이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남녀 휴가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휴가사용자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사용률은 2%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남성들의 참여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성격, 장시간 근로의 조직문화와 더불어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의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

〈표 III-8〉 성별 육아휴직 사용(2003-2008)

년도	전체(%)	여성(%)	남성(%)
2003	6,816(100)	6,712(98.5)	104(1.5)
2004	9,304(100)	9,123(98.1)	181(1.9)
2005	10,700(100)	10,492(98.1)	208(1.9)
2006	13,670(100)	13,440(98.3)	230(1.7)
2007	21,185(100)	20,875(98.5)	310(1.5)
2008	29,145(100)	28,790(98.8)	355(1.2)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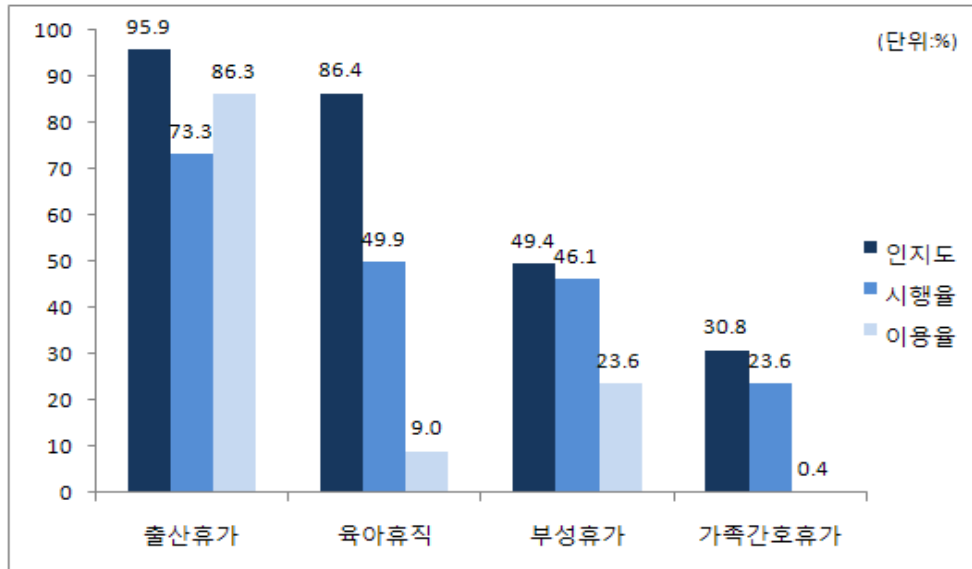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서 2007년에는 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법령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아동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사용하도록 하여 휴직사용의 시기를 선택가능하게 하였으며⁶⁾,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년의 기간을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종래에는 전일제 휴직만이 가능했던 조건에서 시간제 휴직의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육아지원 및 가족돌봄 지원의 노력의무조항을 도입하여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인상하여 개별 기업의 휴직제공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별도의 1년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남녀가 모두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로 보이지만, 추가 1년이 무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사용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6) 2010년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로 확대되었다.

이들 조치는 제도적 설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실제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들 제도들이 여성의 단시간노동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제도사용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현실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고려한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2001년 제도개선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화단계에는 들어섰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는 육아휴직제도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바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변화의 요구조건들이 될 것이다.

한편,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는 어느 정도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 육아휴직은 아직까지 활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95.9%). 또한 기업의 시행율도 73.3%로 나타났다으며, 근로자들의 이용율도 86.3%로 나타나 상당수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인지도는 높은 반면(86.4%), 시행율은 49.9%, 이용율은 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부성휴가의 경우는 인지도 49.4%, 시행율 46.1%, 이용율 23.6%로 나타났다. 가족간호휴가의 경우는 인지도 30.8%, 시행율 23.6%, 이용율 0.4%로 나타나 역시 매우 저조한 이용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홍승아 외(2009)

〈그림 III-3〉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제도 사용현황

실제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휴가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산전후휴가의 사용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좀처럼 휴직신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으로는 직장내 조직문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휴직후 복직의 문제로 즉, 휴직후 복직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현실이 더더욱 이들로 하여금 휴직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7; 김안나 외, 2007; 김혜원, 2008).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 직장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동료의 업무량 증가, 직장분위기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경제적 이유에 대한 해답은 현재의 낮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인상하여 실질적인 소득대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고용보장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규제와 감독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동료 및 직장분위기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요구한다. 육아휴직 사용을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것, 나아가서 가족생활과 일을 균형적으로 생애 중요한 과정으로 수용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3. 노동시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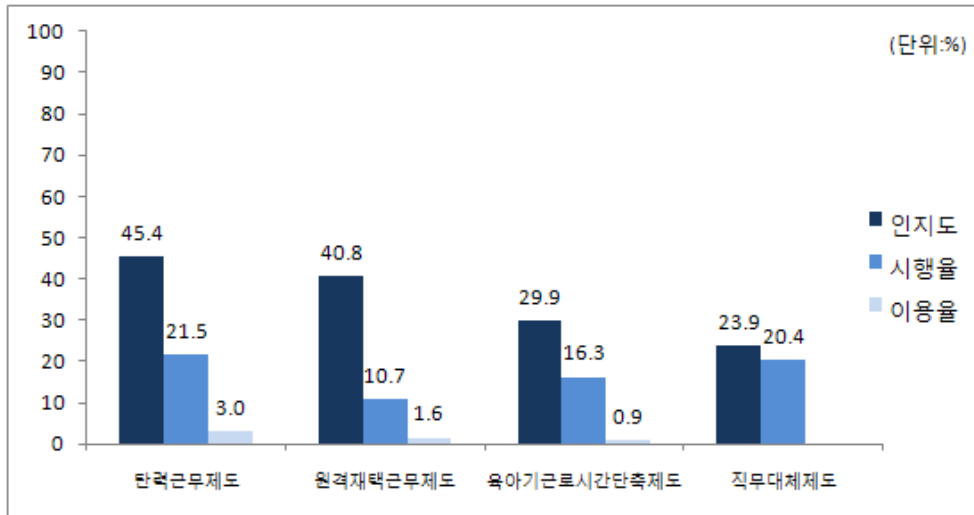
노동시간정책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전일제노동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노동형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있다.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유연근무제도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양육기에 일정기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든지, 혹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9〉 유연근무제의 형태

구분	내용
시간제 근무(Part-Time)	전일제근로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
시차출퇴근제(Flex-Time)	1일 8시간(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총근무시간(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5일보다 짧은 기간동안 근무
재량근무제 (Discretions Work)	주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
집중근무제(Core Time)	핵심 근무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예, 10-12시)
재택근무(At-home Work)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원격근무(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정책 활용율은 매우 저조하다. 탄력근무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중간수준이지만(45.4%), 기업에서의 시행율은 21.5%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의 이용율은 3.0%로 극히 낮게 나타나,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격 및 재택근무제도의 경우에도 인지도 40.8%, 시행율 10.7%, 이용율 1.6%로 역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상 의무시행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29.9%, 시행율 16.3%, 이용율 0.9%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홍승아 외(2009)

〈그림 III-4〉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정책 사용현황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일가정양립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의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으려면 시간제노동에 대한 보호와 차별금지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형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007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등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보호조항이 설치되었으나 여전히 시간제 및 단시간근로형태는 노동시장내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형태가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안적인 근로형태로 기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가족친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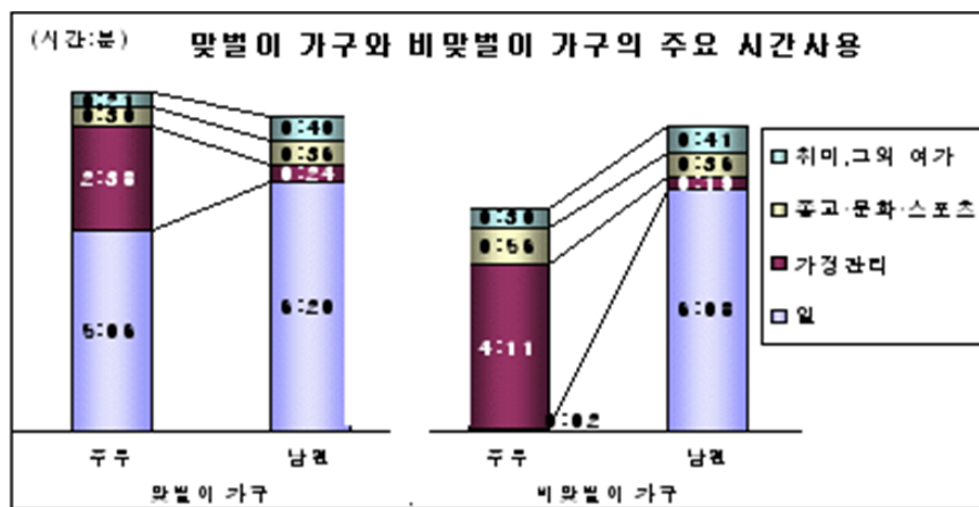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2007) 제정을 계기로 가족친화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상장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족친화지수”(Family -Friendly Index)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Ⅲ-10〉 가족친화지수의 구성

가족친화지수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 근무제도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부양가족 지원제도 · 근로자 지원제도 · 가족친화 문화조성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사업으로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및 활성화,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동시에 가정내 남성의 역할과 책임

을 장려하는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 혹은 홀벌이 가구의 구분 없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의 경우에도 적지않게 나타나 가정내 평등한 역할분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2009)

〈그림 Ⅲ-5〉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주요 시간사용

5. 여성인력정책

3개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핵심 추진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는 분야가 여성인력 정책이다. 여성인력정책은 엄밀하게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라기보다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동시에 요구되는 정책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3개 부처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로 함께 포함시키고자 한다.

특히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여성인력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별된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으로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하여 취업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취업중단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다. 또한 보육정책 역시 취업여성의 육아지원을 통하여 취업중단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기능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노동패널 1-9차 자료를 재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총 2,430명의 일자리 경험을 추적한 결과 각 일자리간 단절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평균 취업유지기간은 약 5.1년인데 반해 이후 일자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유지기간, 즉 근속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일자리 간 단절기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자리 종료 후 두 번째 일자리 진입까지의 단절기간이 약 10.2년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첫 번째 일자리 종료 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사실상 결혼이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상 가족형성의 기간임을 유추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표 III-11〉 여성일자리 변화와 취업유지 및 경력단절 기간(30-54세 여성)

(단위: 년)

일자리 횟수	취업유지 기간	경력단절 기간
1	5.1	-
2	3.3	10.2
3	2.2	6.7
4	1.9	5.4
5	1.6	6
6	1.4	2.7
7	1.3	4.6

일자리 횟수	취업유지 기간	경력단절 기간
8	1.7	2.6
9	1.3	0.9
10	6	2.6
11	0.2	0
12	2.6	0
13	0.2	0
14	0.8	0

자료: 민무숙 외, 2009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이 취업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2008)을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기반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one-stop 종합 취업지원시스템(“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을 설립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2009년 50개소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100개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외국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지표

1. 생활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 EQLS, EWCS, ESWT
2. EU :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
3. OECD : Babies and Bosses 시리즈
4. OECD : Family database
5. 호주 : 호주인의 일과 생활지수
6. 영국 :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7. 일본 : 「雇用均等基本調査」

이 장에서는 EU와 OECD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지표 및 통계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EU와 OECD의 관련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은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표사례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호주, 영국, 일본의 국가사례 역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가정양립 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개발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영역별 지표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구성하는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영역별 지표 구성에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지표 사례는 특정 지표생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통계 및 조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지표생산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생활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 EQLS, EWCS, ESWT

생활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이하 EFILWC)에서는 “일과 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을 두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노동시간, 일가족양립 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FILWC에서 수행된 조사연구는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근로조건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삶의 질 조사』와 『근로조건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① 『삶의 질 조사』(2007)

우선 2003년 1차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삶의 질 조사』 1차 조사에서는 유럽연합 28개 국가에서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8,000명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35,6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생활 균형과 가족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6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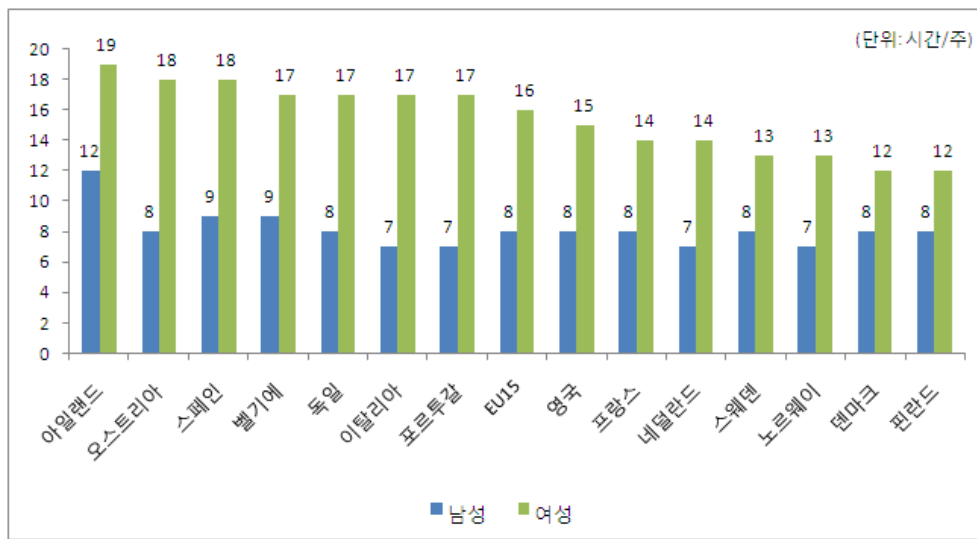
- 소득, 생활수준, 빈곤
- 주관적 안녕(well-being)
- 일과 생활의 균형(WLB)
- 가족생활
- 주거와 지역환경
- 사회의 질

이 중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항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국가의 전반적인 고용현황을 고용율, 성별 고용율, 시간제 고용비율 등을 통해 살펴보고,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조사』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족내 남녀의 시간사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노동시간과 함께 가족시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가족시간이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 및 학습지도 등이 포함된다.

우선 EU 국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보고한 국가는 아일랜드로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 평균 19시간이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사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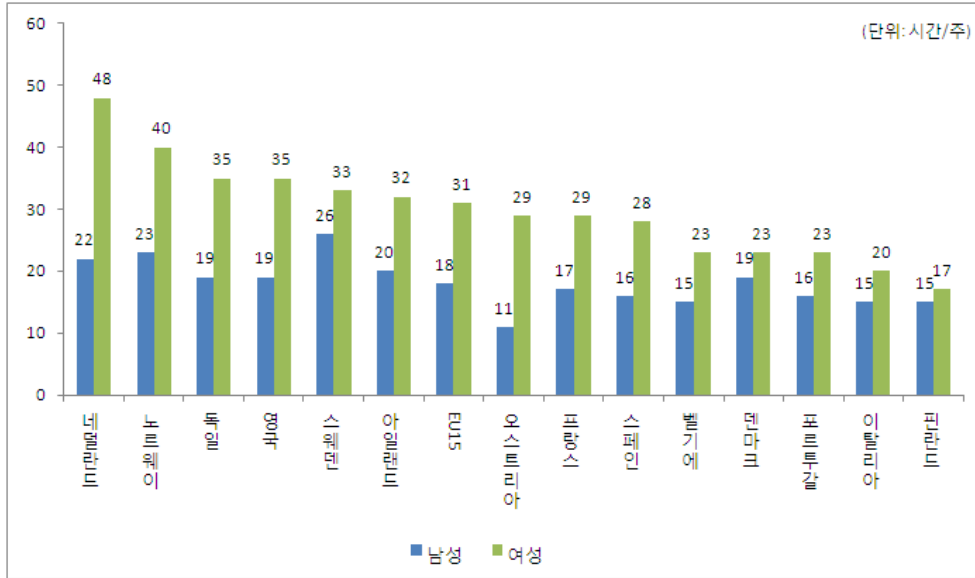
시간은 18시간인데 반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8시간, 스페인에서도 여성 18시간, 남성 9시간 등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EQLS, 2007

〈그림 IV-1〉 EU 국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한편, 자녀돌봄 및 학습지도에 남녀가 사용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간사용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주 평균 자녀돌봄 및 학습시간은 48시간인데 비해 남성은 22시간,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은 40시간, 남성은 23시간 등으로 나타난다.



자료: EQLS, 2007

〈그림 IV-2〉 EU 국가의 성별 자녀양육시간

② 『근로조건조사』(2005)

『근로조건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는 1990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유럽국가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이며, 2005년 제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4차 조사의 주요내용은 노동시간, 일·생활 균형, 노동 만족도 등이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노동시간, 작업장내 물리적 위험, 직장내 폭력, 희롱, 차별문제, 노동의 성격, 노동조직,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영 및 의사소통 구조, 노동과 노동외 생활(working and non-working life),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수입과 임금체계 등 광범위한 영역의 6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노동과 노동외 생활의 장에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저녁근무 및 야간근무, 토요일근무 및 일요일근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자녀유무별 노동시간과 가족생활에 대한 견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가구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2007)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에서는 기업체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간정책과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시간,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조사는 유럽기업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이용실태, 특정 근무시간제도의 도입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파트타임 노동 등은 기업에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고용안정 및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장기돌봄휴가(long-term care leave) 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들로 논의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생활과노동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3가지 조사보고서에서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관련지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EFILWC 에서 개발된 관련지표

조사	지표
EQLS	성별 고용율
	시간제 고용율
	성별 주당 평균노동시간
	성별 무급 노동시간
	성별 요리 및 가사노동 시간
	성별 자녀돌보기 및 학습지도 시간
	일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정도
EWCS	성별 고용율
	성별 고용격차
	주 평균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이상)

조사	지표
	성별, 고용지위별 장시간 노동
	저녁근무 및 야간근무
	토요근무 및 일요근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자녀유무별 노동시간과 가족생활에 대한 견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성별 특성
	파트타임 근로자의 가구 특성
ESWT	주당 평균노동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성별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파트타임 근로자 특성
	유연근무제도 사용근로자 비율
	유연근무제도 도입이유
	육아휴직 사용자 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주: EQLS: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SWT: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2. EU :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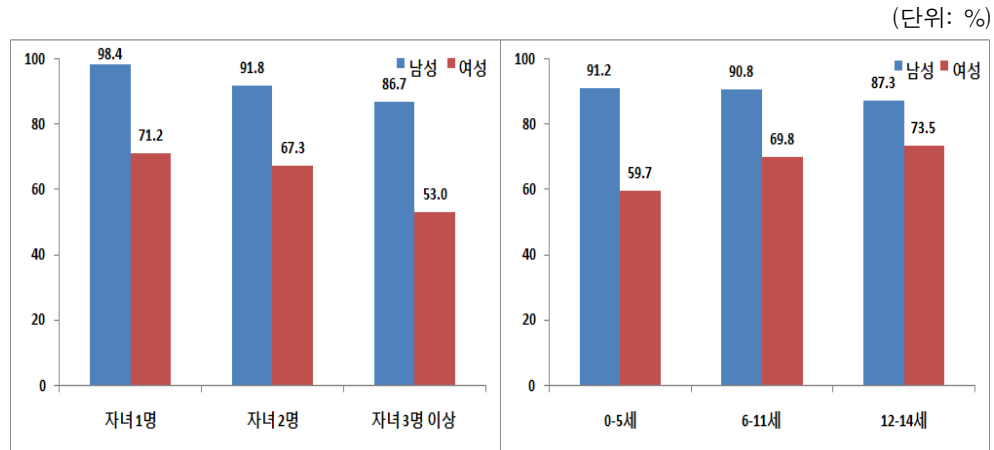
유럽연합 통계처(EUROSTAT)는 2009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Reconciliation between work, private and family life in the European Union*)라는 제목의 통계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통계분석보고서는 앞서 살펴본 생활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Eurostat, OECD 등의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 서론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용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처의 노동력조사(LFS) 결과를 활용한 지표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25-49세 남녀 고용률, 실업률 등과 같은 고용관련 기초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는 대상층의 연령대를 25-49세로 한정할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49세 연령대에 초점을 맞춘 것은 25세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며,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이 28세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는 가족의 주기상 자녀출산과 양육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따라서 이들이 일가정양립의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 외 단시간 근로와 같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일자리의 남녀 취업률 및 취업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중요한 사례는 고용관련 지표를 가족구성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별, 자녀수, 자녀연령 등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즉 배우자 유무별 성별 고용율, 자녀 유무별 성별 고용율, 자녀수별 성별 고용율,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지표의 생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 관련 변수(자녀수, 자녀연령)가 남녀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 및 지표는 주목할 만하다.

7) 유럽연합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



자료: EUROSTAT(2009)

〈그림 IV-3〉 자녀수 및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25~49세, 2006)

제3장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참여 및 시간배분에서는 EFILWC의 2005년 『근로조건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EWCS) 결과를 활용한 지표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변화,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 아동 및 성인 돌봄시간, 일·가정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지표 및 통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제4장 가족 책임과 돌봄 서비스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처의 유럽연합-소득및생활조건(EU-SILC) 자료와 OECD Family Database 자료 등을 활용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미취학 보육서비스 형태, 아동 연령별 공식보육 서비스 이용률, 공식보육 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공식보육 서비스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부부의(25-49세) 취업형태별 보육형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5-49세 인구 중 환자, 장애가족, 노인가족 등을 보살피는 인구의 규모 및 취업상태,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변경 의사 등이 포함된다.

제5장 휴가와 가족책임에서는 OECD, EU의 사회보장공동정보시스템(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MISSO), 유럽연합 정책여론조사(Eurobarometer Survey),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의 결과 등을 활용한 통계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모성 및 부성휴가 기간 등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부모휴가 사용에 대한 태도 및 비사용 사유, 남성 근로자의 부모휴가 사용현황, 부모휴가 사용 여성의 직장복귀 현황 등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6장 유연근무에서는 ESWT,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등 유럽연합 통계처가 사업체와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도입 사유 및 효과, 남녀 근로자의(25-49세) 근로형태별 주 평균 근로시간, 남녀 근로자의(25-49세) 자녀유무별 교대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의 통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에서 제시된 일·가정양립 관련지표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의 관련지표

	지표명
25-49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성별 단시간 취업률
	단시간 취업 주요 사유
	한부모가구의 자녀유무별 취업 상태
	유배우가구의 자녀유무별 취업 상태
	자녀(15세미만) 유무별 성별 고용률
	자녀수별 성별 고용률
	자녀(15세미만) 연령별 성별 고용률
유급노동과 무급 가사노동 참여 및 시간배분	교육수준 및 자녀수별 여성고용률
	주당 무급/유급 노동시간
	성별 평균노동시간
	전일제/시간제 근로형태 및 성별 노동시간 분포
	성별 및 연령별 주당 무급 노동시간
	성별 아동 및 성인 주당 돌봄시간
	근로시간대별 일·가정 양립 인식수준
일·가정 양립 인식수준	

	지표명
가족 책임과 돌봄 서비스	미취학 보육서비스 형태
	연령별 공식 및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률
	연령 및 이용시간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자녀연령대별 공식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공식보육시설의 보육교사 1인당 영아수
	보육시설 보육보조교사 및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보육교사 자격 및 주요 근무시설
	보육교사 자격 및 주요 근무시설
	가구구성형태 및 아동연령별 공식보육시설 이용시간(주 평균)
	아동연령 및 이용시간대별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률
	아동연령별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주 평균)
휴가와 가족책임	아동연령별 육아전문가 및 조부모 육아시간(주 평균)
	부부(25-49세) 취업형태별 육아 형태
	모성휴가 기간
	부성휴가 기간
	법정 모성, 부성 휴가제도 현황
	모성수당
	법정 부모휴가제도 현황
	부모휴가 기간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의사 및 사용 사유
	남성의* 부모휴가 비사용 사유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활성화 요인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장애요인
	남성 근로자가 부모휴가를 사용한 기업 비율
	부모휴가 후 여성의 직장복귀 현황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도입 사유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
	전일제 근로자의(25-49세) 성별 주 평균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25-49세) 성별 주 평균 근로시간

지표명	
	단시간 근로자(25-49세) 비중이 높은 업종
	미혼 및 한부모 가구의 주 평균 근로시간(전일제, 시간제)
	자녀 유무 및 부부 취업상태별 주 평균 근로시간
	성별 비전형근로 취업자 비율(25-49세)
	자녀유무별 성별 교대근무자 비율(25-49세)
	자녀유무별 성별 야간근무자 비율(25-49세)
	자녀유무별 성별 주말근무자 비율(25-49세)
	가족사유로 출퇴근시간 조정가능한 성별 비율(25-49세)
	가족사유로 전일 휴가가 가능한 근로자 비율(25-49세)(연차나 특별휴가 제외)
	가족사유로 활용가능한 법정 휴가제도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25-49세) 근로시간 변경 의사
	성별 재택근무자 비율(25-49세)
	기업의 일가족 양립 제도 도입율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업종별 및 규모별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주: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출산 예정인 18세 이상 취업 남성

3. OECD : Babies and Bosses 시리즈

OECD에서는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시리즈(OECD, 2002, 2003, 2004, 2005, 2007)를 5차에 걸쳐 발간하면서 각국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다. 대상 국가들로는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maternal employment) 문제에 주목하여 국가 간 취업모의 고용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60%가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거의 2/3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취업모의 고용비율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자녀연령과 자녀수를 기반으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녀가 2세 미만일 때 고용율이 낮고, 자녀가 3-6세가 될 때 고용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고용율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인 6세가 되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였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5세가 되면 다시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시간제고용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머니들은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시간제로 일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어머니 복직자(mother returners)”들의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은 종종 정규직 취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되듯이 여성의 취업상태는 자녀연령 및 자녀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표 IV-3〉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여성고용율(15-64세, 2005)

	막내자녀의 연령				15세 미만 자녀수		
	0-16세	2세 미만	3-5세	6-16세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호주	63.1	48.3		70.5	63.3	58.1	
오스트리아	64.7	60.5	62.4	67.5	67.7	60.1	46.5
캐나다	70.5	58.7	68.1	56.9	58.3	58.5	39.4
핀란드	76.0	52.1	80.7	84.2	71.2	70.9	60.1
프랑스	59.9	53.7	63.8	61.7	62.2	57.6	38.1
독일	54.9	36.1	54.8	62.7	58.4	51.8	36.0

	막내자녀의 연령				15세 미만 자녀수		
	0-16세	2세 미만	3-5세	6-16세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이탈리아	48.1	47.3	50.6	47.5	48.3	41.0	27.4
일본	52.4	28.5	47.5	68.1
네덜란드	69.2	69.4	68.3	69.4	70.1	70.6	59.9
스웨덴	82.5	71.9	81.3	76.1	80.6	84.7	75.6
스위스	69.7	58.3	61.7	77.0	69.5	65.4	58.0
영국	61.7	52.6	58.3	67.7	67.1	62.4	42.3
미국	66.7	54.2	62.8	73.2
OECD 평균	61.5	51.9	61.3	66.3	60.6	57.0	44.0

자료: OECD(2007)에서 발췌

다음으로 OECD 국가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해당 국가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조기 아동기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은 부모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필수적인 정책으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이용율 통계자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0-3세 미만(영아기), 3-6세 미만(유아기)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된다. 200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3-5세 아동 보육시설 이용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거의 100% 이용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3개국이 조기교육의 일환으로서 아동기 보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90% 이상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은 73.5%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33.9%로 보고되고 있다.

〈표 IV-4〉 OECD 국가의 보육시설 이용율(2005)

국가	0-3세 미만	3-6세 미만
프랑스	28.0	101.9
이탈리아	6.3	100.3
벨기에	33.6	99.6
스페인	20.7	98.6
뉴질랜드	32.1	92.7
덴마크	61.7	89.7
네덜란드	29.5	70.2
스웨덴	39.5	86.6
핀란드	35.0	46.1
일본	15.2	86.4
노르웨이	43.7	85.1
영국	25.8	80.5
독일	9.0	80.3
호주	29.0	71.5
미국	35.5	62.0
한국	19.5	60.0
그리스	7.0	46.8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한편 OECD 국가들의 모성휴가(maternal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법정 유급모성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종전소득의 100%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

모성휴가가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 부성휴가와 부모휴가는 보다 최근에 발달된 제도들이다. 부성휴가는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율은 100%이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3일 이하이지만,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영국, 북유럽 국가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부모휴가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1년간의 기간에 더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2달씩이 할당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약 2/3가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를 최소 6개월 이상을 제공하여 이 기간을 모성휴가와 합하면 어머니들은 전일제 기반으로 거의 1년간을 자녀양육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OECD *Babies and Bosses* 에서 개발된 일가정양립 관련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IV-5〉 OECD에서 개발된 관련지표

영역	지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행태	여성고용율
	시간제고용 비율
	자녀연령별 고용율
	자녀연령별 시간제고용 비율
	유자녀가구 부모의 고용율
	가구유형별·자녀연령별 부모의 고용율
보육	보육시설 유형별 제공율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정부의 보육지출/GDP
	교사와 아동 비율
세제혜택	가구총수입 중 가족급여 비율
	추가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휴가정책	출산휴가
	부모휴가
	부성휴가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4. OECD :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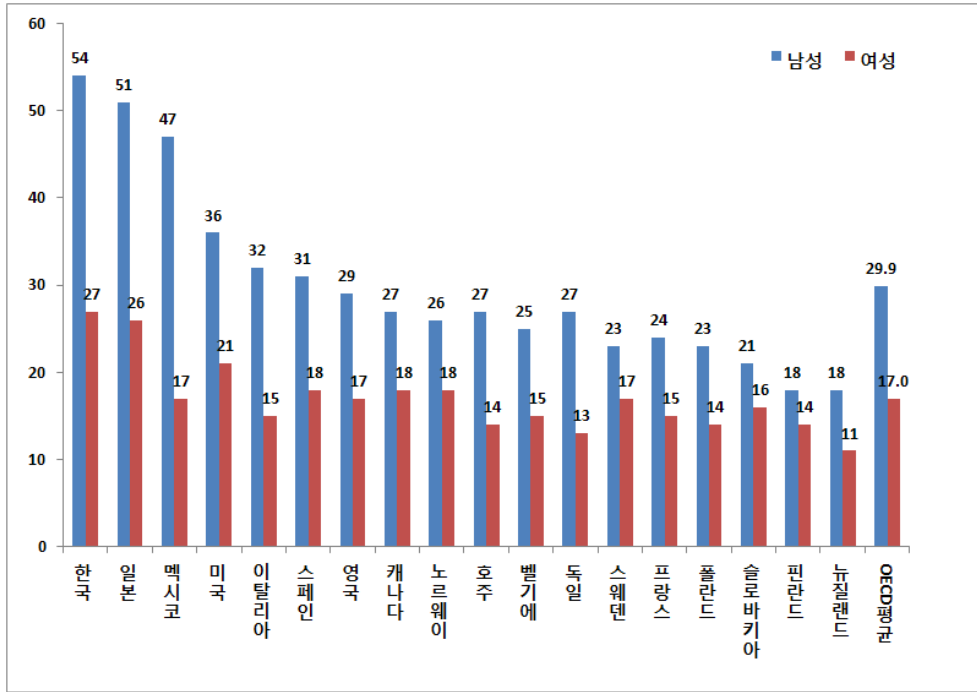
OECD의 Family database는 OECD가 2002-2007년에 실시한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개발한 OECD 회원국의 가족성과와 가족정책 관련된 지표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이다.

OECD Family Database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주요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 가족, 아동, 보육정책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가능한 국제지표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된 통계이다. 데이터의 수집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Benefits and Wages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그외 EU에 의해 관리되는 database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다(고경환 외, 2009).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 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 및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 아동 성과 등 총 4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5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 구조에는 가족 및 아동, 출산 지표, 혼인 및 배우자 상태의 3개 중분류에 가족 규모와 구성, 가족내 아동, 출산율, 기대수명 등 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에는 가족, 아동 및 취업 상태,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등 2개 중분류에 고용상태별 가족의 아동, 어머니 고용률(maternal employment),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자녀 유무와 자녀 연령별(가장 어린자녀 기준) 양친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노동시간,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통근 시간, 노동, 돌봄, 가사일에 소요되는 시간 등 1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단위: 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그림 IV-4〉 OECD 국가 남녀의 1일 평균 통근시간

또한 가족 및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영역에서는 유자녀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세/급여 지원, 아동관련 휴가, 영유아 대상 공보육 및 교육, 가족유형과 가구 소득 대비 보육급여와 부모의 순보육비용 유형 등 4개 중분류로 구성된다. 4개의 중분류하에 다시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가족 현금급여, 조세/급여 체계의 성 중립성, 아동부양 체계, 양육 지원, 부모 휴가제도의 주요 특징, 부모별 휴가급여 사용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보육서비스 등록율,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방과후보육 서비스 등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과(children outcomes) 영역에서는 아동 건강, 아동 빈곤, 교육/문해(literacy), 사회참여 등 4개 중분류에 영아사망률, 저체중 출산, 예방접종률, 모유수유율, 아동 질병, 비만, 아동 빈곤, 성별 교육수준, 남녀 대학 졸업자

의 전공별 분포, 10세 및 15세 남녀 아동의 문해력 점수, 미취학미취업 청년층, 자원 봉사 및 NGO 활동, 투표 참여율, 십대 투옥률, 청소년 약물 남용, 십대 자살 등 18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OECD Family database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표 총 52개 중에서 한국 관련 통계는 37개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지표들 중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통계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유무별 어머니 고용율, 가족 상황별 어머니 고용, 자녀 유무 및 가장 어린자녀 연령별 양친부모 가구의 노동시간, 자녀 유무 및 가장 어린자녀 연령별 한부모 가구의 노동시간,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성별 부모휴가 사용률, 방과후 보육서비스, 미취학미취업 청년층, 청소년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지표의 한국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미취학미취업 청년층, 청소년 약물남용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일·가정양립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미생산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경환 외, 2009).

특히 주목할 것은 어머니 고용률, 자녀 유무 및 자녀 연령별(가장 어린자녀 기준) 양친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노동시간과 같은 자녀 특성이 부모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EU 회원국이나 OECD 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노동력조사를 포함하여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취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의 관련통계 생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V-6〉 OECD Family database 의 관련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가족의 노동 시장 지위	가족, 아동 및 고용 상태	고용 상태별 가족의 아동		
		어머니 고용률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파일		
		성별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성별 주당 통상 근로시간		
		자녀유무와 자녀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양친가구의 노동시간		
		자녀유무와 자녀연령별(막내자녀 기준) 한부모가구의 노동시간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통근 시간		
		일, 보살핌, 가사노동 소요 시간		
		가족 및 아동 대상 공공 지출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 조세/급여 지원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가족현금급여				
조세/급여 체계의 성 중립성				
아동부양 체계				
양육지원				
아동 관련 휴가	부모휴가제도 주요 특징			
	부모별 휴가 급여 사용률			
	취업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			
영유아 대상 공보육 및 교육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보육지원			
가족유형 및 가구소득 대비 보육급여와 부모순비용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방과후보육서비스			

자료: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고경환 외, 2009; Adema et. al(2009)를 바탕으로 구성

5. 호주 : 호주인의 일과 생활지수

호주에서는 민간기관 및 통계청 등에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호주대학교 일+생활센터(Centre for Work + Life)에서는 2007년부터 호주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인의 일과 생활 지수’(The Australian Work and Life Index, AWALI)를 발표하고 있다. ‘호주인의 일과 생활 지수’는 호주 국민의 일·가정 양립 문제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2007년 남호주 주정부는 “주(州) 전략계획(State Strategic Plan)”의 하나로 일·가족 균형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주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과정에서 부딪치는 갈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호주인의 일과 생활 지수’ 개발이 추진되었다.

‘호주인의 일과 생활 지수’를 위한 최초의 조사가 2007년에 실시되었으며, 2009년판까지 발표가 된 상태이다. 2009년의 경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취업하고 있는 남성 1,480명과 여성 1,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호주인의 일과 생활 지수’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고용 특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응답자의 노동환경, 무급노동수요, 봉사활동, 일·가정 양립, 건강, 대인 관계의 질, 스트레스 등과 같이 일과 생활 양립에서 느끼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다(Pocock. et. al., 2009).

〈표 IV-7〉 ‘호주인의 일과 생활지수’ 조사 항목

범주	항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지리적인 위치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성인의 수, 자녀의 수, 성인의 연령, 자녀의 연령, 가구수입
일자리 특성	고용상태, 직업, 산업, 고용계약의 유형, 노동조합 가입
노동환경	통근 시간, 혼자서 일하는 시간, 동료와 일하는 시간 몇 시간 일할지 선택 (스스로), 노동 자치권 (언제 일하는지), 취업 보장, 노동 자치권(얼마나, 어떻게 일하는지), 업무과중, 노동 유연성, 노동 만족도
무급노동수요	무급 가사노동 시간 가족 구성원이나 기타 사람들에 대한 무급 돌봄 시간
봉사활동	봉사활동 시간
일·가정 양립	일이 일 이외의 활동 및 책임을 방해하는지 일이 가족시간이나 사회적인 시간을 제한하는지 개인 삶이 일하는데 있어서 책임과 활동을 방해하는지 개인 삶이 일하는데 있어서 책임과 활동을 제한하는지 일이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를 방해하는지 일과 그 밖의 삶에 있어서의 균형에 대한 만족 정도 시간 압박
건강	일반적인 건강상태 측정 과거 3개월 동안 의사를 찾아가간 횟수 과거 3개월 동안 약 처방전을 받은 횟수
관계의 질	가장 가까운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한편 호주 통계청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호주 국민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호주 통계청이 발간한 『2009년 호주 사회 동향』(*The Australian Social Trends 2009*)의 일·가정 양립 장에는 8개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미만 유자녀 부

모의 취업상태, 맞벌이가구 부모의 양육 및 출산, 육아휴직 현황,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업무 조정 경험, 일하는 가족의 보육이용 현황, 양친부모 및 한부모 가구의 주요 생활시간사용 현황, 양친부모 및 한부모 가구의 시간부족이나 시간압박 정도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2009년 호주 사회 동향』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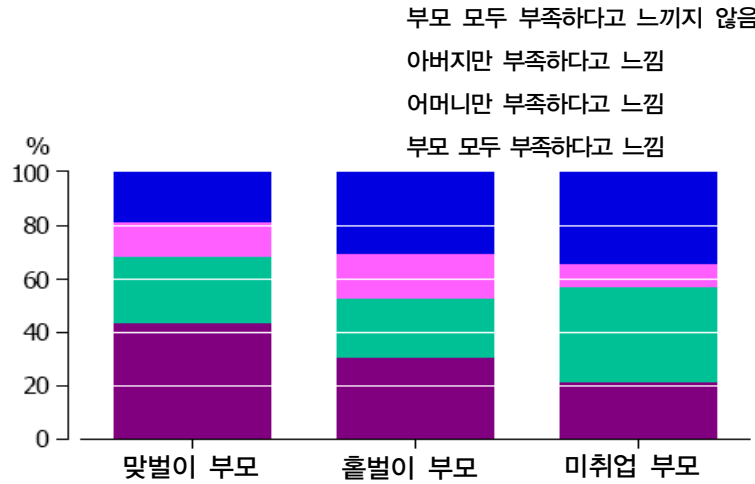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표 IV-8〉 『2009년 호주 사회 동향』의 관련 지표

지표명	자료원	작성기관
1.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	SEARS	통계청
2. 맞벌이가구의 양육 및 출산·육아휴직 현황	SEARS	통계청
3.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업무 조정 형태	SEARS	통계청
4. 일하는 가족의 보육이용 현황	SEARS	통계청
5. 두부모가구의 주요 생활시간사용 현황	시간사용조사	통계청
6. 한부모가구의 주요 생활시간사용 현황	시간사용조사	통계청
7. 양친부모가구의 시간부족 및 시간압박 정도	SEARS	통계청
8. 한부모가구의 시간부족 및 시간압박 정도	SEARS	통계청

주: SEARS는 호주 통계청의 취업 형태, 은퇴 및 연금 조사(Survey of Employment Arrangements, Retirement and Superannuation)를 의미함.

자료: 호주 통계청(2009). *Australian Social Trends* 을 바탕으로 구성.



자료: 호주 통계청(2009). Australian Social Trends

〈그림 IV-5〉 호주 부모의 시간압박에 대한 인식

6. 영국 :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영국정부는 2000년부터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⁸⁾의 WLB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000년 *Work-Life Balance 2000: The Baseline Study* (WLB 1)를, 2003년에는 *The Second Work-Life Balance Study, 2002/3* (WLB 2)를, 그리고 2007년 *The 3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2007*(WLB 3)를 발간함으로써 총 3차에 걸쳐서 정부차원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보고서』(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WLB)를 발간하고 있다.

WLB 시리즈는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도, 기업에서의 제도 제공현황, 이용율, 근로자들의 수요, 그리고 고용주의 제도편의 및 비용에 대한 인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8) BERR은 DIUS(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와 함께 2009년 BIS(Department for Innovation and Skills)로 통합되었다.

2000년 WLB 1차 조사는 기업조사, 기업의 본사조사, 근로자 조사 등의 세가지 조사로 구성되었다. 기업조사(Employer Survey)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총 2,500 업체를 조사하였으며, 기업 본사조사(The Head Office Survey)는 기업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적인 제도와 제도실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조사(Employee Survey)는 역시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총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9〉 1차 WLB 조사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 조사내용	
1차 WLB	노동시간	
	유연근무제도의 시행	
	재택근무제도의 시행	
	휴가제도	최근 2년간 모성휴가 사용자 비율
		최근 2년간 모성급여 수급자 비율
		최근 2년간 모성급여 수급형태
		부성휴가 사용자 비율
	직장보육시설	
	조직내 컨설팅,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과정	
	WLB의 비용과 편익	
	기업의 WLB 수용도	정보와 법제에 대한 인지도
정보와 법제에 대한 이해과정		
정보제공의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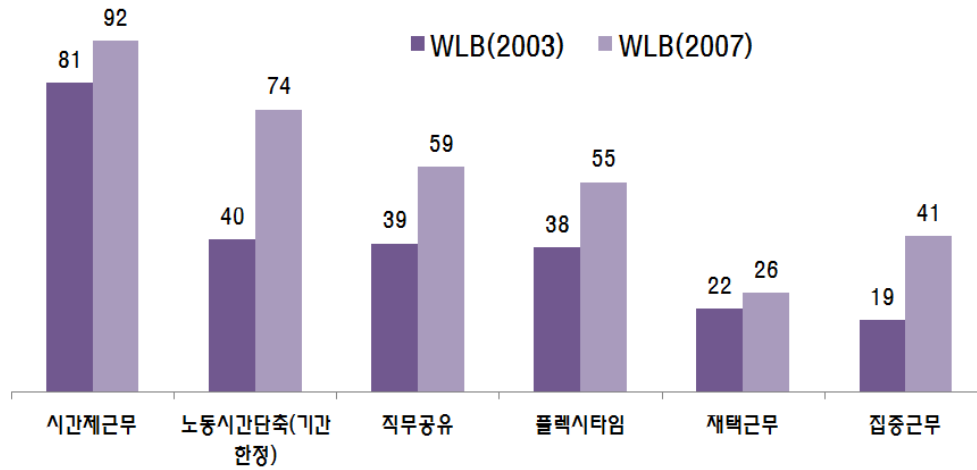
한편 2007년의 3차 WLB 조사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체 1,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노동시간, 유연근무제도 제공과 이용, 법 개정에 대한 인식, 휴가제도(모성/부성/부모휴가/특별 휴가), 취업부모 지원제도, 고용주의 WLB 이슈에 대한 태도 등이다.

〈표 IV-10〉 3차 WLB 조사의 주요내용

	구분	
3차 WLB	노동시간	
	유연근무제도 제공형태와 유연근무제도 이용율	시간제 고용
		일자리 공유
		플렉스 타임
		집중근무제
		노동시간단축
		재택근무
	개정된 법에 대한 인지도	
	휴가제도의 이용율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특별휴가
	기업의 취업부모 지원제도	
	기업의 WLB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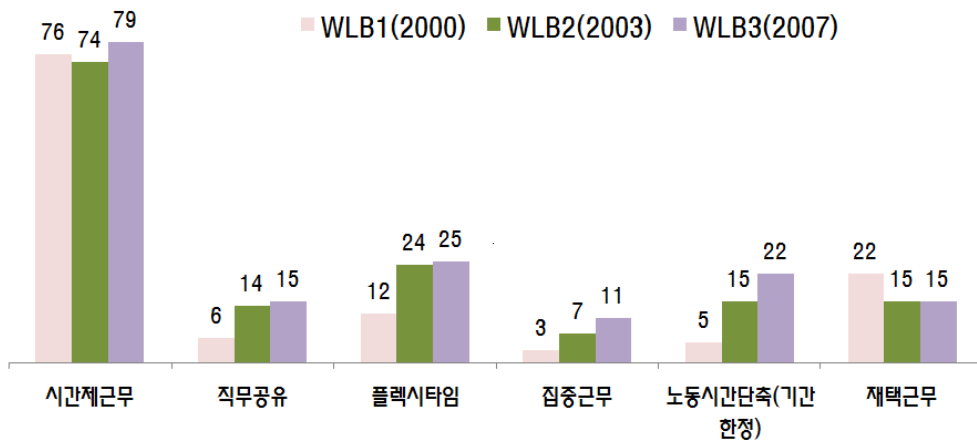
3차에 걸친 영국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보고서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07년에는 시간제 근무, 노동시간단축, 직무공유, 플렉스 타임, 재택근무, 집중근무 모든 형태에서 증가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유연근무제도가 상당 수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율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시간제 근무형태에서 이용율이 증가하였고, 그 외 플렉스 타임, 노동시간단축제도 등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그림 IV-6〉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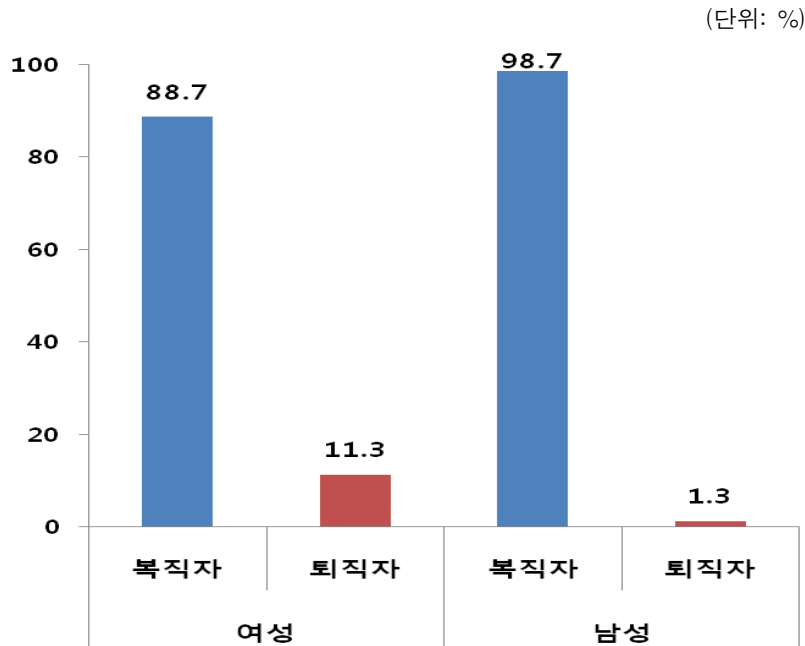


자료: BERR(2007). The Thi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그림 IV-7〉 영국기업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변화(2000-2007)

7. 일본 : 「雇用均等基本調査」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2009년 8월 『2008 雇用均等基本調査』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雇用均等基本調査」의 조사 목적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제도의 실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일본 표준산업분류 상의 16대 산업에 속하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이다. 2008년 조사의 경우, 산업 및 규모를 고려한 층화표집에 의한 표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10,063개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7,324개 사업체가 최종 응답을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자녀간호휴가제도,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 제도, 가족간호휴가 이용 근로자 지원제도, 육아 및 가족간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및 심야근로 제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재고용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09. 「平成20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結果概要

〈그림 IV-8〉 일본의 남녀 육아휴직자의 복직 및 퇴직 현황

〈표 IV-11〉 일본 「雇用均等基本調査」(2008)의 관련지표

	결과표 명칭
육아휴직	육아휴업제도의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제도의 대상노동자 현황별 사업장 비율
	유기계약노동자의 육아휴업취득요건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기간중의 정기승급처리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복직후 직장/직종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성별 육아휴업자 비율
	육아휴업종료 후 복직자 및 퇴직자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 내용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단시간근무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육아시 이용가능한 플렉스타임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시업 및 종업시간의 조정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소정의 노동의 면제)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사업장내 위탁시설)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제도의 이용자 비율	
자녀간호 휴가제도	자녀간호휴가제도의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제도의 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 취득자 비율 및 취득일수별 취득자 비율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한 시간외 노동제한 규정 유무 및 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한 심야업 제한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 휴가제도 등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유무 및 취득가능일수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휴가를 취득한 경우 임금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비율
	재고용제도 유무별 사업장 비율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관련 제도가 개별 기업 수준에서 도입, 정착되어야만 남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체 수준에서의 제도의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실시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영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OECD 등의 사례들은 실태조사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호주의 사례는 개인수준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현재, 필요성, 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지표와 조사항목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향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기업수준에서의 제도의 도입 및 실시현황과 개인수준에서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대한 경험과 현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이며, 그 조사결과는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영역 및 지표

1. 주요 영역의 구성
2. 영역별 지표 구성

이 장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선,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정책영역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주요정책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앞서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가정양립정책이 한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영역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집합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3개 부처의 관련정책을 모두 검토하였다. 정책검토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이다. 3개 부처의 정책을 분석한 작업을 통하여 주요 정책영역을 먼저 구성하고, 구성된 정책영역별로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즉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정책영역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영역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볼 것이다. 지표의 구성은 우리나라 정책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제적인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IV장의 외국사례를 통해서 수집된 새로이 요구되는 통계들도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새로 요구되는 신규통계들은 향후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통계생산의 과정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이므로 정책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1. 주요 영역의 구성

먼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된 영역으로 여성인력의 활용기반 내실화,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등의 여성인력 정책과 평

등문화 확산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정책 등의 내용이 있다.

〈표 V-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의 관련정책

1. 여성인력 활용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3 여성 근로자 차별방지	1-3-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1-4 여성 일자리 확대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3-3 평등문화 확산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특화 실업자 훈련시스템 강화,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여성의 역량제고, 일자리 확대 정책과,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추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정책, 그리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등을 통한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여성 고용정책 추진 인프라 보강을 통한 여성 고용정책 추진정책 등이 있다.

〈표 V-2〉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의 관련정책

1. 여성의 역량 제고, 일자리 확대	
1-1. 여성 일자리 확대	1-1-1 여성 적합형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1-2. 여성 특화 실업자 훈련 시스템 강화	1-2-3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훈련 실시
1-4.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4-1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및 기능 개선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실시
	1-4-4 고용지원센터의 여성 취업지원 기능강화
	1-4-5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 여성 취업훈련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1-4-6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2.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2-1-1 연령별 촘촘한 보육지원 체계 마련
	2-1-2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대
	2-1-3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2-3. 출산비용의 사회화 확대 추진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 추진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 제도 활성화	2-4-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촉진 기능 강화
	2-4-3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3.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3-1.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3-1-2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 구축
	3-1-3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3-2. 휴일·휴가제도 활용 활성화	3-2-2 배우자 출산휴가제 활성화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3-3-1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 추진
	3-3-2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3-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3-4-1 자발적 단시간근로 확산 및 인식 개선
	3-4-2 단축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법제화 추진

	3-4-3 자발적 단시간일자리 분석·발굴
	3-4-4 단시간근로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 확충
	3-4-5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강화
5.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정책 추진	
5-2. 여성 고용정책 추진 인프라 보강	5-2-3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5-2-4 일·가정 양립 지원 전담조직 구축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정책,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영역이 있다.

〈표 V-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의 관련정책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2-1-1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2-2-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III.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1-1-3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이상에서 살펴본 3개 부처의 세부 정책영역을 수합하여 이를 다시 주요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다시 주요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3개 부처의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영역을 공통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3개 부처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인력정책,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와 환경의 조성, 가족친화기업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정책, 평등문화정책 등으로 재구성된다.

우선 여성인력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이 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을 특별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취업지원을 특화시켜서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육정책은 3개 부처에서 공통적인 정책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녀연령별 보육지원체계 마련,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강화하는 방안,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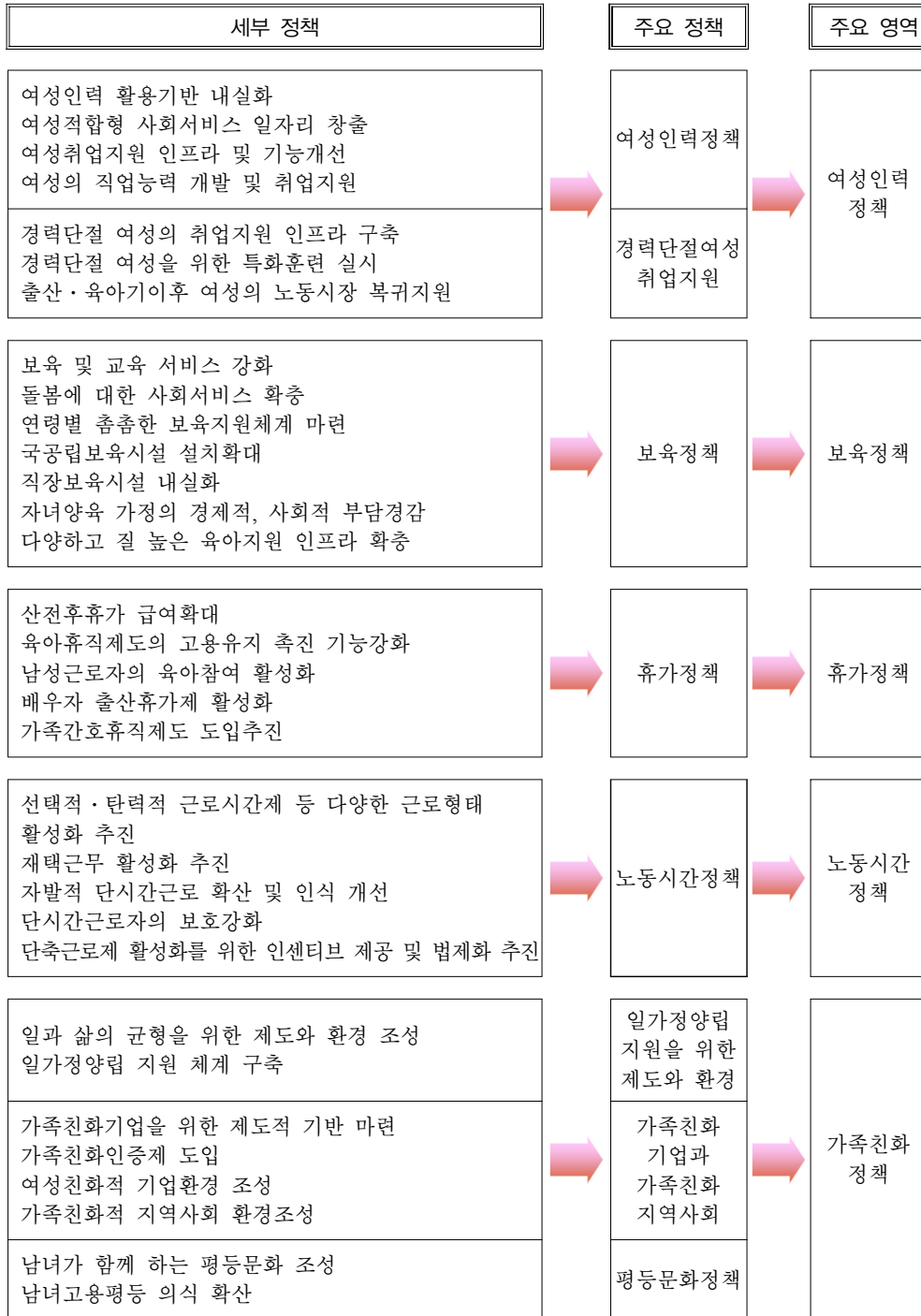
휴가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있는데,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육아휴직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유지를 촉진하는 기능강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있다. 그 외 현재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의무제도화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있다.

한편 노동시간정책은 지금까지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영역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관심과 정책노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기반으로서 노동시간의 조정을 강력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조정을 위해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자발적 단시간근로제도 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 분야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저조한 분야이므로 향후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와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정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지역사회, 가족 등의 영역이 모두 정책대상 영역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일·가정양립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정책의 수용과 집행이 그 어느 영역보다도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남녀간 평등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가사노동 분담, 자녀양육 분담, 가족시간⁹⁾ 등이 있는데, 즉 이들 영역에서 남녀간에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이러한 가족내 역할분담이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의 어떤 기반을 제공해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9) 가족시간이란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적인 가족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족생활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물리적, 정서적, 공간적 시간을 모두 포괄한다.



〈그림 V-1〉 3개 부처의 일·가정양립 관련정책



〈그림 V-2〉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영역

2. 영역별 지표 구성

가. 보육정책

보육정책영역은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정책,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정책, 보육종사자 육성 및 확보정책의 3가지 중분류로 구성되며, 각각의 중분류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지표가 구성된다.

우선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정책에서 필요한 지표로는 정책지원의 대상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만6세 미만 아동수, 보육형태 및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형태 등이 있다. 특히 보육형태별 부모의 취업형태는 부모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육형태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

형태 통계는 어떤 가구형태에서 보육지원이 더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 속에서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형태는 보육지원의 대상집단을 세분화시켜 줄 수 있고, 정책대상의 규모와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집행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보육료 지원비율,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등이 있다. 보육료 지원비율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주요 정책대상 집단은 어떠하며, 보육료 지원폭은 어떤 대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GDP대비 보육재정 비율은 국가수준에서 전체 회계예산 중 보육재정을 책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며, 국가별 비교지표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등에서는 국가의 보육정책 수준을 비교할 때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통계이지만 향후 보육정책 및 가족정책에서 요구되는 통계이므로 생산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정책은 앞서 OECD 자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보육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정책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율,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보육시설 만족도, 국공립보육시설 제공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비율, 아이돌보미 이용율,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율, 가구유형별 1일 평균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서도 전체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보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핵심통계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종사자 육성 및 확보정책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 아이돌보미 제공현황 등이 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수 통계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 통계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반드시 사용되는 통계이다.

〈표 V-4〉 보육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보육정책	보육료 재정 및 보육료 지원정책	만6세 미만 아동수
		보육형태별 부모의 취업상태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
		보육료 지원비율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이용율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이용율
		국공립보육시설 제공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비율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보육시설 만족도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율
		가구유형별 1일 평균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보육종사자 육성 및 확보정책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아이돌보미 제공현황

나. 휴가정책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휴가정책으로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의 세가지 중분류로 구성된다. 우선 산전후휴가 정책영역에서는 우선 정책대상 집단인 출산여성 근로자수가 필요하고, 산전후휴가 사용자수, 사용율, 사용일수, 그리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 산전후휴가 사용근로자의 직장복귀율 등으로 세부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정책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수,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성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직장복귀율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배우자출산휴가 정책영역에서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휴가정책과 관련된 통계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대상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들 휴가정책의 실제 활용율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각 제도의 사용자수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고용보험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과연 전체 여성근로자 중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 전체 남녀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즉 III장의 육아휴직 사용인원 현황에서 제시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율 50.2%는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자의 비율”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67.8%, 전체 근로자 중 33.1%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현실을 감안하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전체 근로자의 규모는 훨씬 크며, 현재의 통계는 정책 수요집단의 상당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출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즉 향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전체 출산한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제도사용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휴가정책영역에서는 새로이 필요한 통계지표로 각 제도의 사용율만이 아니라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사유를 파악하여 제도의 실제 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휴가사용후의 직장복귀율에 대한 통계도 제도의 실제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표 V-5〉 휴가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휴가정책	산전후휴가정책	출산 여성 근로자수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수
		산전후휴가 사용자수
		산전후휴가 사용률
		산전후휴가 사용일수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육아휴직정책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수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정책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배우자출산휴가 도입기업 비율		

다. 노동시간정책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정책은 제도 활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여성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부처합동으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time Arrangement)의 확산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통계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정책은 노동시간 현황, 노동시간단축정책, 유연근로형태 확산정책,

단시간근로 확산정책의 4가지 중분류로 구성된다. 노동시간현황 정책에서의 핵심지표로는 가장 중요하게는 장시간노동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녀변수를 고려한 부모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녀연령별¹⁰⁾, 자녀유무별,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들의 구축은 향후 자녀가 있는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도 필요하다.

노동시간단축 정책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세부지표로는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수,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율,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사유 등으로 구성된다.

유연근로형태 확산정책영역에서는 성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수,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수,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등으로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연근무제도의 형태는 VI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¹¹⁾.

마지막으로 단시간근로 확산정책영역에서는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성별 단시간 근로사유,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표 V-6〉 노동시간정책 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노동시간정책	노동시간 현황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10) 여기에서 자녀연령의 기준은 외국의 범례에 따라서 주로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11) 유연근무제도의 형태는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형태 중에서 이후 정책의 실질적인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유형의 근로형태에 대한 지표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근로시간 단축정책	성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수
		성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률
		성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미사용사유
	유연근무제도 확산정책	유연근무제도* 성별 사용자수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수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단시간근로 확산정책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 유연근무제도에는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이 포함됨

라. 가족친화정책

가족친화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등문화 조성정책,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정책,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정책의 3가지 중분류로 구성된다.

우선 평등한 가족생활 및 가족문화와 관련된 평등문화 조성정책영역에서 대표적인 핵심지표로는 성별 자녀양육시간, 성별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성별 평일 가족시간,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 성별 주말 가족생활 등이 구성된다. 또한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갈등수준, 만족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에 대한 성별통계가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정책영역에서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비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비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수용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수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료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비율 및 수용도 등에 대한 자료는 새롭게 구축되었으므로 향후 생산방안을 검토할 대상이다.

그리고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정책영역에서는 지역사회내 가족지원기관, 문

화관련 시설,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편의성 등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가족친화 지역사회에 관련된 세부지표는 아직 부처수준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가족문화 및 가족여가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될 수 있다(홍승아 외, 2007).

〈표 V-7〉 가족친화정책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가족친화 정책	평등문화 조성정책	성별 자녀양육 시간(1일 평균)
		성별 가사노동 시간(1일 평균)
		가사노동 분담정도
		성별 평일 가족시간*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평일)
		성별 주말 가족생활(주로 하는일)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수준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수준
		성별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의 견해(10-18세)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정책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비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비율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용도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정책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현황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제공현황**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의 안전성
		지역사회의 편의성

*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시간을 의미함

** 가족문화관련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가족공원, 문화공연장,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마. 여성인력정책

여성인력정책은 3개 부처의 공동 추진정책이며 일·가정양립정책의 직접적인 정책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실행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 여성인력정책은 여성경제활동 증진정책, 여성경력단절 방지정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정책, 여성일자리 확대정책의 4개 중분류로 구성된다.

우선 여성인력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들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과 실업인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동공급, 노동투입, 취업구조, 인력자원의 효율성 등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및 정책형성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향상, 빈곤퇴치 등 정부의 정책입안과 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기 노동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V장의 유럽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령대(25-49세)를 제한하여 양립육구가 가장 높은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유무, 자녀연령, 자녀수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통계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IV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변수를 포함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에 대한 통계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중요한 필수적인 통계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맞벌이가구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매년 생산되어 정책 표적집단(target group)이 되는 맞벌이가구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여성경력단절 방지정책영역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여성퇴직자의 직접적인 노동시장 퇴장의 계기로 정확히 연계할 수 없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후자

의 경우는 자녀요인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기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소요기간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정책영역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이수율,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연계율 등을 세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여성일자리 확대정책영역에서는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율,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민간기업 여성관리직 비율등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표 V-8〉 여성인력정책영역의 세부지표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여성인력 정책	여성경제 활동현황	성별 고용율(25-49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성별 연령별 고용율(25-49세)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성별 혼인상태별 고용율(25-49세)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율(25-49세)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성별 가구유형별 고용율 성별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녀유무별(17세미만) 성별 고용율 자녀유무별(17세미만)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율 자녀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녀수별 성별 고용율 자녀수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맞벌이가구 비율
	여성경력단절 방지정책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퇴직자 규모)
출산으로 인한 퇴직여성 근로자수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여성 근로자수
		여성 경력단절 사유
		여성 경력단절 기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요기간
		성별 평균 근속연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정책	직업훈련 이수율
		직업훈련 이수자 취업연계율
	여성일자리 확대정책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민간기업 여성관리직 비율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정책영역별 지표체계를 각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하면 <표 V-9>와 같다.

〈표 V-9〉 지표체계와 정책 연계성 검토결과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육 정책	보육료 지원정책	만 6세 미만 아동수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보육형태별 부모의 취업상태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보육료 지원비용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GDP 대비 보육제정 비용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보육서비스 이용률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및 서비스 지원정책	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실립주체별 보육시설 이용률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제공비용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비용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실적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2 국공립 보육시설 실적 확대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휴가 정책	보육 종사자 육성 및 확보정책	보육시설 만족도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가구유형별 일일 평균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 동수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아이돌보미 제공현황	1-5-2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2-1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 원 인프라 확충
		출산 여성 근로자수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미취학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수			
		산전후휴가 사용자수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산전후휴가 사용자 이용률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산전후휴가 사용자 이용일수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정책	육아휴직정책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산전후휴가 사용자 이용률		2-3-1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화 확대추진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정책	육아휴직정책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성별 육아휴직 사용율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활성화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수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활성화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활성화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2-4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용 제도활성화 2-4-3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3-2-2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율		3-2-2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		3-2-2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3-2-2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기업비율		3-2-2 배우자출산휴가제 활성화	
노동시간	노동시간 현황	성별 주 평균 노동시간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3-1-1 주40시간근로시간제 조기정착과 실근로시간 단축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책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의 환경 조성	3-1-1 주40시간근로시간제 조기 정착과 실현시간 단축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의 환경 조성	3-1-1 주40시간근로시간제 조기 정착과 실현시간 단축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의 환경 조성	3-1-1 주40시간근로시간제 조기 정착과 실현시간 단축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1-2 일가정양립지원체계 구축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1-2 일가정양립지원체계 구축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1-2 일가정양립지원체계 구축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유연근무제도 확산정책	성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수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수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3-3-4 자발적 단시간근로 활성화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성별 자녀 양육 시간 (1일 평균)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가사 노동 시간 (1일 평균)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가사노동 부담경도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평일 가족시간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명일)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주말 가족생활 (주로 하는일)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수준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수준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국민의 일가정양립 제도 인지도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 (10-18세)의 견해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1-3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조성정책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2-1-3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가족
친화
정책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비율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비율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수용도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현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족친화 지역사회조 성 정책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제공현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안전성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편의성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2-3-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여성 인력 정책	여성경제활동 현황	성별 고용률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연령별 고용률(25-49세)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5-49세)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 경력단절 방지정책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률 (25-49세)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가구유형별 고용률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성별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자녀유무별(17세미만) 성별 고용률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자녀유무별(17세미만)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자녀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맞벌이가구 비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출산으로 인한 퇴직여성 근로자수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여성 근로자 규모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소분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 경력단절 사유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여성 경력단절 기간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소요기간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4-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된 취업지원 실시	2-2-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성별 평균 근속연수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직입훈련 이수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 일자리 확대정책		여성 직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민간기업 여성관리직 비율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1 여성일자리 확대	(III) 1-1-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VI. 일·가정양립정책 영역별 필요통계 생산 방안

1. 일·가정양립정책의 통계연계성 검토 결과
2. 필요통계의 생산가능성 검토 결과

이 장에서는 V장에서 구성된 정책영역별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정책영역별로 구성된 지표의 통계연계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책영역별 필요통계, 주요항목, 통계의 활용도, 작성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통계연계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영역별 필요통계의 생산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1. 일·가정양립정책의 통계연계성 검토 결과

가. 보육정책

1) 공통통계

- (필요통계) 보육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보육수요 아동 현황, 부모의 취업 상태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육수요 파악 및 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보육부담 완화가 부모의 취업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국가보육정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보육정책추진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보육수요 현황	- 만 6세 미만 아동수 - 보육형태별 부모의 취업상태 -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주민등록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개발/선 필요성) 보육수요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발/선이 필요한 통계가 없다.

2) 보육료 지원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현황은 보육료 지원 규모와 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과 보육료 지원 비율은 보육예산의 규모와 수혜정도 및 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은 보육재정 투입 정도를 측정하는 통상적인 지표인 GDP대비 보육재정 비율과 함께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현황	- 보육료 지원 비율	정책연동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정책연동	보육통계 국민계정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보조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을 작성, 발표할 필요가 있다.

3) 보육시설·서비스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통계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정책의 전달과정과 수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연동 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통계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포괄정도와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국가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보육시설 현황	- 보육서비스 이용율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이용율 - 국공립보육시설 제공비율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율 -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 보육시설 만족도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육통계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현황	-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비율 - 가구유형별 일일 평균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육통계,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개발/선 필요성) 보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발/선이 필요한 통계가 없다.

4) 보육종사자 육성 및 확보 정책

(필요통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현황 통계가 필수적이다.

(통계 활용도)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현황 통계는 보육인력 육성 확보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현황	-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 아이돌보미 제공현황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 (개발/선 필요성)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발/선이 필요한 통계가 없다.

나. 휴가정책

1) 공통통계

- (필요통계) 휴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산전후휴가정책 대상자인 출산 여성 근로자와 육아휴직 대상자인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수립의 핵심통계이며, 특히 소요 예산 추정에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휴가정책 대상 현황	- 출산 여성 근로자 수 -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수	정책연동 정책연동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휴가정책 대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출산 여성 근로자 수) 고용보험DB와 건강보험DB를 연계하여 당해연도 출산 여성 근로자 통계 작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수) 고용보험DB와 주민등록DB 연계를 통한 규모 추정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선을 통해 규모 추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산전후휴가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산전후휴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출산 여성 근로자의 출산후휴가 사용 현황과 산전후휴가 종료 후 직장 복귀 현황 관련 통계가 필수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 산전후휴가 활용률 제고 및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를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통계 활용도) 산전후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출산전후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서 핵심적인 정책연동 통계 및 보조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산전후 휴가 사용 현황	- 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 출산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 - 산전후휴가 사용일 수 -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조 정책연동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산전후휴가 사용률,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통계 생산을 위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출산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 건강보험DB와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해 해당 년도 출산 여성 근로자 가운데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율을 산출한다.
 -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해당 년도 출산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및 미사용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고용보험DB를 활용하

여 해당 년도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 근로자의 추적 관찰을 통해 직장 복귀율을 파악한다.

3) 육아휴직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육아휴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대상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과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현황 관련 통계가 필수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미사용 사유를 보조 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통계 활용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 남성 양육 참여 확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정책 수립에서 핵심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 수 -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조 정책연동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미작성 **=미공표

- (개발/선 필요성)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통계 생산을 위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기 생산한 성별 육아휴직 대상자 수 대비 당해 연도 성별 육아휴직자 수를 바탕으로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산출한다.

-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6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해당 년도 육아휴직 사용 남녀 근로자의 추적 관찰을 통해 직장 복귀율을 파악, 공표한다.

4) 배우자출산휴가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활용 현황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정착 및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수립에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를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현황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정책연동	미작성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 수	정책연동	미작성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정책연동	미작성
	-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보조	미작성
	-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기업 비율	정책연동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통계 생산을 위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및 사용일 수) 당해년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한 남성 근로자 인원 및 사용일 수를 집계한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고용보험DB와 건강보험DB를 연계하여, 당해연

도 출산 여성의 근로자 남편 중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을 산출한다.

-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당해년도 배우자출산휴가 청구 대상자 가운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미사용 사유를 조사한다.
-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기업비율)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현황 및 미도입 사유 등을 조사한다.

다. 노동시간정책

1) 공통통계

- (필요통계) 노동시간정책은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에 따른 남녀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균형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남녀의 노동시간 현황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남녀 근로자 특성별 노동시간 통계는 일가정양립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므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남녀 근로자의 노동시간 현황	-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자녀연령별, 자녀유무별,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통계 생산을 위해 관련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자녀유무별 맞벌이/홀벌이부부의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개선을 통해 해당 통계를 생산한다.
- (자녀연령별 맞벌이/홀벌이부부의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개선을 통해 해당 통계를 생산한다. 이 때 자녀연령은 가장 어린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자녀수별 맞벌이/홀벌이부부의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개선을 통해 해당 통계를 생산한다.

2) 노동시간 단축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황 통계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필수 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통계는 육아기근로시간 확산 정도 및 향후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미사용 사유를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사유*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조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미사용 사유 파악을 위한 신규조사 등 개발이 필요하다.

3) 유연근무제도확산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유연근무제도 현황 통계는 근로 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필수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사용 현황 통계는 제도 확산과 소요 예산 추정에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유연근무제도의 정책 및 확산을 위해 사업체 미도입 사유 및 근로자의 미사용 사유를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유연근무제도 활용 현황	- 유연근무제도 도입 사업체 수	정책연동	미작성
	-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보조	미작성
	- 성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수	정책연동	미작성
	- 유연근무제도 미사용 사유	보조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4) 단시간근로 확산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단시간 근로 현황 통계는 일가정양립 근로형태 확산 정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필수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단시간근로제도 사용 현황 통계는 제도 확산과 소요 예산 추정에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시간근로제도의 정책 및 확산을 위해 사업체 미도입 사유 및 근로자의 미사용 사유를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단시간 근로 현황	-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정책연동 보조 정책연동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통계 생산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 가족친화정책

1) 공통통계

- (필요통계) 가사분담 실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일·가정양립정책의 성과를 가정내에서 측정하고,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필수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가사분담 실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은 일·가정양립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목표 수립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이다.
 - 가사노동분담 정도는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객관적 지표를 보완하는 보조통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가사노동분담 실태	- 성별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가사노동 분담정도	정책연동 보조	생활시간조사 가족실태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 국민 인식	-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 수준 -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 수준 - 국민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발표주기의 단축 및 신규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
 -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 수준,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 관련 문항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포함하고, 현행 5년인 조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 관련 문항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포함하고, 현행 5년인 조사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관련 문항을 개발하여 사회조사(통계청)를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평등문화조성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가족활동 현황 통계는 일·가정양립정책 확산에 따른 가족문화 개선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일·가정양립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가족시간과 가족생활은 국민의 일가정양립 정도를 파악하는 객관적 지표로 일·가정양립정책 추진 성과의 측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부모의 일가정양립 정도에 대한 자녀의 평가를 보조통계로 활용하여 일가정양립 정도에 대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가족생활 현황	- 성별 평일 가족시간 -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평일)* - 성별 주말 가족생활(주로 하는 일) -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의 견해(10-18세)*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조	생활시간조사, 가족실태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신규문항을 개발하여 기존 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 관련 문항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포함하여 조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의 견해) 관련 문항을 생활시간조사(통계청)에 포함하여, 부모의 일가정양립 실천에 대한 자녀의 인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은 일가정양립제도의 전사회적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필수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가족친화 기업 환경 현황은 일·가정양립정책의 민간부문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가족친화 기업환경 현황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비율* -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용도*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보조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기존 자료 활용 및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기존 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비율) 관련 문항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수용도) 관련 문항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4)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도 크므로, 가족친화 지역환경 현황 통계는 지역자치단체의 일가정양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이다.
- (통계 활용도) 지역자치단체 수준의 일가정양립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예산 배분 순위를 판단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가족친화 지역 환경 조성정책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 현황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제공 현황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지역사회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편의성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개발/선 필요성) 조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만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이 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 여성인력정책

1) 공통통계

- (필요통계)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여성인력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과정, 그리고 성과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여성 경제활동 현황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여성 경제활동 현황 통계를 여성인력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요 예산 산정 및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통계정보인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여성 경제활동 현황	- 성별 고용율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연령별 고용율(25-49세) -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 성별 혼인상태별 고용률(25-49세)* -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률(25-49세) -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정책연동	경제활동인구 조사 (통계청) *=미공표
	- 가구유형별 남녀 고용률 - 가구유형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유무별(17세 이하) 성별 고용률 - 자녀유무별(17세 이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 - 자녀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수별 성별 고용률 - 자녀수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맞벌이가구 비율	정책연동	미작성

- (개발/선 필요성)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 경제활동 현황) 가구유형, 자녀유무, 자녀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여성경력단절 방지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여성경력단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경력단절현상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 (통계 활용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취학적 자녀가 있는 여성 퇴직 근로자 규모, 여성 경력단절 사유, 여성 경력단절 기간 등에 대한 통계는 여성경력단절방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핵심통계이며, 특히 소요 예산 산정과 직결되는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경력단절 여성현황	-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정책연동	미작성
	- 출산으로 인한 퇴직여성 근로자 수	정책연동	미작성
	-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여성 근로자 수	정책연동	미작성
	- 여성 경력단절 사유	정책연동	미작성
	- 여성 경력단절 기간	정책연동	미작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소요 기간	정책연동	고용형태별
	- 성별 평균 근속년수	정책연동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개발/선 필요성) 신규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경력단절여성규모, 출산으로 인한 퇴직 여성 근로자 수,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 여성 근로자 수,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및 기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소요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조사이었고, 향후 보다 본격적인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통계 개발과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화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관련 통계 작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여성 근로자 수) 별도의 조사와 더불어 고용보험 DB와 건강보험DB의 연동을 통해 해당 년도의 출산으로 인한 퇴직 여성 근로자 수를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직업훈련참여자의 취업률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직업교육참여자의 취업률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성과평가 및 소요 예산과 직결되는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여성 직업훈련 현황	-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 - 여성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정책연동 정책연동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 (개발/선 필요성) 여성의 직업훈련 현황과 관련된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각종 민간 기관을 포괄하는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직업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각종 민간 기관을 포괄하는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직업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4) 여성일자리 확대정책 필요통계

- (필요통계)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확대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비율, 민간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통계가 필수적이다.
- (통계 활용도) 여성일자리확대 관련 통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성과 평가와 직결되는 정책연동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통계 및 활용도 정리】

필요 통계	주요 항목	활용도	작성 현황
여성일자리 현황	-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 공공기관 여성 관리직 비율 - 민간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정책연동 정책연동 정책연동	미작성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관리직 비율 (AA-NET 내부자료) 공공기관여성관리직 비율 (여성가족부)

- (개발/선 필요성)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통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필요통계의 생산가능성 검토 결과

위에서 제시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통계연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책영역별 필요통계의 생산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정책에서는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요통계가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통해 생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 6세 미만 아동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육형태 및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율’, ‘보육시설 만족도’ 등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보육료 지원비율’,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등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보육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휴가정책의 필요통계 중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자수’, ‘산전후휴가 사용일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수’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연보』 등 고용보험DB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 여성 근로자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각종 휴가제도 사용률과 미사용 사유, 휴가 사용자의 직장 복귀율 등은 새로운 조사를 통해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이다.

셋째, 노동시간정책 관련 필요통계 중에서는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등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자녀연령별 남녀 단시간 근로자 비율’ 등은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의 관련 조사 및 지표생산에서는 자녀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노동시간과 취업상태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부모의 자녀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통계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친화정책의 필요통계 중에서는 ‘성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분담정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현황’,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제공 현황’ 등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의(10-18세) 견해’,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비율’ 등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5년이어서 조사주기 단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9년에 실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실태조사』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만을 조사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생활시간조사』의 자녀돌봄 시간의 조사에서는 조사항목을 보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문항은 신체적 돌보기, 책임어주기 및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등 4개 문항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분류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구성된 측면이 있으며, 이는 돌봄노동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행동과 동시행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주행동 위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돌봄노동이 비가시화되어 누락되거나 과소측정되는 문제도 있으므로(장혜경·홍승아 외, 2006) 조사문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정책 관련 필요통계 중에서는 ‘성별 고용율/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연령별 고용율/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율/경제활동참가율’, ‘민간기업 여성관리직 비율’,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등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가족부, AA-NET 등의 내부자료를 통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유형, 자녀연령, 자녀유무, 자녀 수 등에 따른 남녀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들은 현행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부부 비율’, ‘경력단절여성 규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요 기간’ 등도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어, 새로운 통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필요통계의 작성항목별 생산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VI-1>과 같다. 통계작성표에서 각 지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란 ‘6세 이하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를 의미하며, 보육이용 아동의 연령은 ‘6세 미만 아동’을 의미한다¹²⁾. 또한 자녀연령별 변수를 사용하는 각종 지표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외국의 범례를 따라서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종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율의 지표에서는 대상연령 집단을 일가정양립의 가장 중요한 수요집단이 되는 25-49세의 연령대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2) 아동연령의 기준이 부처별로 다소 상이한데,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에서는 “6세 이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표 VI-1〉 필요통계의 작성항목별 생산가능성 검토 결과

범례: ●=공표, ▲=생산가능, 미공표, ★=개선/개발 필요 통계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보육정책	보육수요 현황	만 6세 미만 아동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보육형태별 부모의 취업상태	●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부모의 취업상태	●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현황	보육료 지원비율	●	보육통계, 국민계정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GDP 대비 보육재정 비율	▲	보육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 통계청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현황	보육서비스 이용율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실립주체별 보육시설 이용율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국공립보육시설 제공비율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현황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율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만족도	●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보육서비스 이용율	●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가구유형별 일일 평균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휴가정책 현황	보육교사 및 아이돌보미 현황	●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건수로 판단	
	출산 여성 근로자수	★	고용보험DB 건강보험DB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보험DB와 건강보험DB 연계, 추정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산전후 휴가 사용 현황	미취학아동이 있는 맞벌이/홀벌이 근로자 수	미취학아동이 있는 맞벌이/홀벌이 근로자 수	★	고용보험DB 주민등록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통계청)	기업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원 등은 제외되므로, 공무원/교원 등은 별도로 집계, 협산함	
		산전후휴가 사용자수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출산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	★	고용보험DB 건강보험DB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보험DB와 건강보험DB 연계, 추정	
		산전후휴가 사용일수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출산여성근로자 중 산전후휴가 미사용자 대상 조사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근로자의 직장 부귀율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추적을 통해 동일 직장 부귀율 파악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	고용보험DB 주민등록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미취학 아동이 있는 남녀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비율/1~6년 동안이므로 파소추적을 최소화하도록 개발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현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근로자의 직장 부귀율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자 근로자 추적을 통해 동일 직장 부귀율 파악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를 통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파악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 파악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노동시간 정책	남녀 근로자의 노동시간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유연근무 제도 활용 현황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파악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	신규 조사	통계청 고용노동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미사용 사유를 조사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등을 통한 조사 방안 검토 필요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기업 비율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를 통해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도입 현황 파악
		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만 17세 이하의 최연소 자녀 기준 (미취학/취학자녀로 구분)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가족관계 파악 문항 개선 및 주말 부부 등 분산 배우자의 취업상태 파악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	고용보험DB,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 장려금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선을 통해 파악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	고용보험DB,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남녀 근로자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사유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남녀 근로자 대상으로 미사용 사유 조사
		성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수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 등을 통해 남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현황 파악 유연근무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가족 친화 정책	단시간 근로 현황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수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안전부, 외국사태 등을 참고함.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	신규 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를 통해 도입 현황 파악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유연근무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근로기준법, 행정안전부, 외국사태 등을 참고함.
		성별 단시간 근로 사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사업체조사를 통해 미도입 사유 파악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막내자녀 기준) 가족관계 파악 문항 개선
		성별 1일 평균 자녀양육시간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년 가족실태조사항목에 포함
		성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가사노동 분담정도	●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성별 평일 가족시간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시간이란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함
		성별 가족과 저녁식사 빈도(주중)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조사연도 및 조사주기 변경
가족생활 현황	일가정양립 인식 현황	성별 주말 가족생활(주로 하는 일)	●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조사연도 및 조사주기 변경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자녀의 견해(10-18세)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해당 문항 추가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수준	★	신규 조사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 인식 현황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수준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수준	★	신규 조사	여성가족부	
		국민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	신규 조사	통계청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가족친화 기업환경 현황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	행정자료	여성가족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	행정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도입비율	★	신규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 대상 조사 실시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비율	★	신규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문항 추가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용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조사대상을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현황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현황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가족공 원, 문화공연장,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시설 제공현황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조사대상을 전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의 안전성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의 편의성	★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경제 인력 정책	여성경제 활동 현황	성별 고용률(25-4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일·가정양립 지원이 필요한 25-49 세로 한정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성별 연령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성별 혼인상태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현행 미공표, 향후 공표 필요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현행 미공표, 향후 공표 필요
		성별 교육정도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성별 교육경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한 생산 방안 검토 필요
		성별 가구유형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성별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17세 이하)
		자녀유무별 성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17세 이하)
		자녀유무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막내자녀 기준)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막내자녀 기준)
		자녀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자녀수별 성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자녀수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맞벌이가구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핵심통계로 생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	신구조사	통계청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퇴직자 규모를 의미하여, 경력단절 여성 규모 파악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화 방안을 검토함
		출산으로 인한 퇴직여성 근로자수	★	신구조사	통계청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여성 근로자수	★	신구조사	통계청	
		여성 경력단절 사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외국사제 등을 참고하여 경력단절 사유를 세분화함
		여성 경력단절 기간	★	신구조사	통계청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소요 기간	★	신구조사	통계청			
성별 평균 근속년수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정책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 여부	작성현황		비고
				통계명칭	작성기관	
여성직업 훈련현황		여성의 직업훈련 이수율	★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여성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 일자리 현황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의를 통 한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정의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비율	●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민간기업 여성관리직 비율	●	보고자료	여성가족부	

VII. 결 론

1. 연구의 요약
2. 미생산 필요통계 생산을 위한 개선 방안

1.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곤란이 우리사회의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그동안 정부는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친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가정양립정책 분야에서는 필요통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의 주요 영역별로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성별통계는 정책수립의 기초작업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분야의 기초자료 수집과 결과분석 등 전반적인 통계생산 절차와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가정양립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 정책분야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통계의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정책현장에서 필요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Ⅱ장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취업의 최대 장애요인은 육아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자녀양육 책임을 갖는 남녀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즉 자녀가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중단하는 일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Ⅲ장에서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이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보육정책이 있다. 2009년 현재 33,550개소의 보

육시설이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2.1%가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 직장보육시설, 아이돌보미, 방과후 보육, 양육수당제도 등 다양한 보육정책이 있다.

다음으로 휴가정책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대표적인 정책이며, 20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홍승아 외, 2009) 산전후휴가의 경우 86.3%, 육아휴직 사용율은 9%로 나타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계가 고용보험 DB에서 제공되어 그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되는 제한성이 있으므로 향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시간정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전되지 못한 영역이지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유연근무제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업의 제공현황, 근로자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가족친화적인 기업지원,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등의 세부과제들이 있다.

또한 엄밀하게 본다면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라기보다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분야로서 여성인력정책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현실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일·가정양립정책의 범주로 함께 포함시켰다.

IV장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 관련지표 생산과 관련하여 외국의 관련지표 생산현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생활과노동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EQLS), 『노동상황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조사』(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Reconciliation between*

work, private and family life in the European Union), OECD의 *Babies and Bosses* 연구 시리즈, OECD Family database, 호주의 일·가정 양립 관련 국민 인식 조사, 영국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사업체 및 근로자 조사,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사업체 조사 등을 검토하였다.

V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지표를 위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관련 세부정책을 부처별로 수집한 후 다시 이들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다시 본 연구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주요 영역별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공통통계와 세부정책 영역별 필요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VI장에서는 주요 정책영역별로 구성된 필요통계의 생산방안을 검토하였다. 필요통계로 구성된 지표들의 현재 통계생산 현황을 검토하고 이들의 작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통계활용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통계의 생산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존의 통계에서 제공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규 통계로 개발하여 작성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육정책에서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만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은 재분석의 과정 없이 직접 생산되는 통계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휴가정책 관련지표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통계가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나, 그 대상자의 범주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 출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용 실태에 대한 통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노동시간정책 관련지표에서는 성별 노동시간에 관한 통계는 현재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나,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등 자녀변수와 가구유형별 변수가 고려된 보다 세밀하게 설계된 통계자료들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노동시간이나 취업상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필요하다.

가족친화정책 관련지표에서는 가족관련 통계자료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가족 시간, 가족생활에 관련된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가족친화 기업과 가족친화 지역 사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생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관련부처의 초기 사업이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통계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정책 관련지표 역시 주요 정책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지원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생산,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영역별 정책시행의 역사와 관련통계의 생산 현황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정책은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정책시행의 역사가 20여년 경과하여 정책의 성과 역시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책관련 통계지표도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휴가정책영역은 2001년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시작은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제도의 시행이 시작된 것은 2007년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시행경과와 관련통계의 생산 역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의 단계로 평가할 수 있겠다.

노동시간정책은 그동안 제도화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관련통계의 생산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에 따라 정책에 필요한 관련통계 지표의 구성 및 생산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정책은 2007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족친화기업환경 조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시행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도 향후 정책의 발달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통계지표의 구축과 생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정책은 3개 부처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입과 동시에 일·가정양립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책영역이다. 특히 종래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개발한 데 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의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즉 기존의 경제활동 참여여성만이 아니라 출산, 임신,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방지정책과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인력정책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특히 일·가정양립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다양한 통계지표들도 필요하지만, 이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지표의 생산이 앞으로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미생산 필요통계 생산을 위한 개선 방안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개선

본문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여성인력정책 관련 지표의 상당 부분이 현재 작성 중인 통계를 통해서 생산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조사를 통해서 는 맞벌이/홀벌이 부부 비율, 자녀유무, 자녀연령 등이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을 통해서 는 한 쌍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한 쌍 이상의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구의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의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구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노동력 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 등과 같이 자녀연령이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구 구성원 관계 파악을 위해 가구 구성원의 상호 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관계 행렬 방식(Relationship Matrix Approach)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규통계 생산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지만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에서 필수적인 통계의 생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신규통계는 <표 VII-1>과 같다.

<표 VII-1> 필요통계의 작성항목별 신규통계

범례: ▲=생산가능, 미공표, ★=개선/개발 필요 통계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여부	
보육정책	보육개정 및 보육료 지원 현황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	▲	
		출산 여성 근로자수	★	
휴가정책	휴가정책 대상 현황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홀벌이 근로자 수	★	
		출산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률	★	
	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	
		산전후휴가 사용 여성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현황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일수		★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 사유		★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기업 비율		★	
	노동시간 정책	남녀 근로자의 노동시간 현황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
			자녀유무별 부모의 노동시간	★
자녀수별 부모의 노동시간			★	
맞벌이/홀벌이 부부의 노동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	
		성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사용 사유	★	
유연근무제도 활용 현황		성별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수	★	
		성별 유연근무제도 미사용 사유	★	
		유연근무제도 도입 기업 수	★	
		유연근무제도 미도입 사유	★	
단시간 근로 현황		자녀연령별 성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	

	필요통계	작성항목	생산여부
가족친화 정책	일가정양립 인식 현황	성별 일가정양립 갈등수준	★
		성별 일가정양립 만족수준	★
		국민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
	가족생활 현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사용에 대한 10-18세 남녀 자녀의 견해	★
	가족친화기업환경 현황	연간 Family Day 운영 현황	★
		기업규모별 일가족양립제도 도입 및 활용 비율	★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용도	★
	가족친화 지역환경 현황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 제공현황	★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시설 제공현황	★
		지역사회 가족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
		지역사회의 안전성	★
		지역사회의 편의성	★
여성인력 정책	여성경제활동 현황	성별 혼인상태별 고용률(25-49세)	▲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25-49세)	▲
		가구유형별 남녀 고용률	★
		가구유형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유무별(17세이하) 성별 고용률	★
		자녀유무별(17세이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연령별 성별 고용률	★
		자녀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자녀수별 성별 고용률	★
		자녀수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맞벌이부부 비율	★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여성 근로자 수	★
		미취학 자녀가 있는 퇴직 여성 근로자 수	★
		여성 경력단절 사유	★
		여성 경력단절 기간	★
	여성직업훈련 현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소요 기간	★
		직업훈련 이수율	★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 일자리 현황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률	★
		여성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증가율	★

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실시 및 일가정양립지수 개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일·가정양립정책의 영역별 개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수를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별 기업수준에서 도입, 정착되어야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이 일·가정양립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일·가정양립정책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업수준에서의 제도의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실시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가정양립제도의 제도 도입율, 제도 활용율, 제도 수용도, 제도시행후 기업의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제도 이용율, 제도 이용의 어려움, 일가정양립의 갈등과 만족도, 제도이용후 일가정양립 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가정양립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일가정양립 경험, 일가정양립 갈등 및 만족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IV장에서 살펴본 EU의 다양한 유럽국가 조사, 영국의 Work-Life Balance Survey, 호주의 Work-Life Index, 일본의 「雇用均等基本調査」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기업, 근로자, 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일가정양립지수를 작성하여,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의 성과 측정 및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환 · 정경희 · 강지원 · 김미숙 (2009).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선화 외 (2009). 『2008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009).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노동부 (200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 노동부 (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기본계획』
- 노동부 · 여성가족부 (2010). 『'10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장혜경 · 김혜영 · 홍승아 · 은기수 · 이명진 · 김영란 · 주재선 · 송치선 (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장혜경 · 홍승아 · 이상원 · 김영란 · 강은화 · 김고은 (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민무숙 · 박성정 · 오은진 · 박수미 · 이택면 · 김승연 · 김혜원 · 김주영 · 유계숙 (200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여성부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서문희 외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육아정책개발센터
- 여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 통계청 (1998. 2009). 『사회통계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 相馬直子 · 조순주 · 진미정 (2007). 『가족친화적 지역 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 이미화 · 김영란 · 이영미 · 유계숙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 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ema, W., M. del Carmen Huerta, Panzera, A., Thevenon, O., and Pearson, M. (2009). *The OECD Family Database: Developing a Cross-National Tool for Assessing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Child. Ind. Res. 2:437 - 460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 *Australian Social Trends 2009*
- BERR (2000). *Work-Life Balance 2000: The Baseline Study*

- _____ (2003). *The Second Work-Life Balance Study*
- _____ (2007). *The 3rd Work-Life Balance Employer Survey*
- Calnan, S. (2005). “Changing the way we work: Towards more flexible form of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cus*. October 2005
- d’Addio, A. C. & M. M.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 Daly. M & K. Rake (2003). *Gender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polity
- Duvander, A.-Z. and G. Andersson (2005).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PIDR Working Paper, WP 2005-013. Rostock: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Esping-Andersen, G. (2002). “A new gender contract”, In G.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ed),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09). *Reconciliation between work, private and family life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5).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_____ (2007).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 _____ (2007).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 Gornick, J. & Meyers, M.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 Krieger, H. (2007). “Work-life balance: a life-course perspectiv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oundation Focus*. Issue 4
- Lewis, S. (2008). “Work-Family Balance Policy: Implementation and Practice in the UK”. paper presented at KWDI “Balancing Work and Family” International Conference. 2008.8.25-26
- OECD (2001).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Helping parents into paid employment”.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_____ (2002, 2003, 2004, 2005,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 Family Life. Vol.1-5.* Paris: OECD
- _____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_____ (2007). *Employment Outlook*
- _____ (2007). *Factbook: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Statistics*
- _____ (2007). *Family Database*
- _____ (2009). *Society at a Glance*
-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Pearson, M. (2009). *The OECD Family Database: Developing a Cross-National Tool for Assessing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Child. Ind. Res. 2:437-460
- Pocock, B., Skinner, N., and Ichii, R. (2009). *Work, Life and Workplace Flexibility: The Australian Work and Life Index 2009.* Adelaide: Centre for Work + Life.
- Røsen, M. (2004),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Ruhm C. (199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85-317
- 日本 厚生労働省(2009). 「平成20年度雇用均等基本調査」

부 록

- <부표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의 장별 구성 및 수록 통계지표
- <부표 2> OECD Family database 수록 지표 및 한국 포함 여부
- <부표 3> 일본 「雇用均等基本調査」(2008)의 결과표 목록

〈부표 1〉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 개인, 가족 생활의 조화』의 장별 구성 및 수록 통계지표

	지표명	자료원
1. 서론	2000 - 2007 EU-27개국 고용 성장	Eurostat (National Accounts and Labour Force Survey)
	2000 - 2007 EU-27개국 고용 변화	Eurostat (National Accounts and Labour Force Survey)
	2000 - 2007 EU회원국 고용 성장	Eurostat, National Accounts.
	2007년 EU회원국 고용 성장	Eurostat (National Accounts and Labour Force Survey)
	2007년 고용률과 리스본 목표 달성 정도	Eurostat, LFS
	2007년 EU회원국의 고용률	Eurostat, LFS
	2000 - 2007 EU-27개국 실업률	Eurostat, LFS
	2007년 실업률과 2000-2007년 실업률 변화	Eurostat, LFS
	2007년 EU회원국의 실업률	Eurostat, LFS
2. 25-49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2006년 고용률과 2000-2006년 고용률 변화	Eurostat, LFS
	2006년 실업률과 2000-2006년 실업률 변화	Eurostat, LFS
	2000년, 2006년 남성 단시간 취업률	Eurostat, LFS
	2000년, 2006년 여성 단시간 취업률	Eurostat, LFS
	2006년 EU-27개국의 주된 단시간 취업 사유	Eurostat, LFS
	2006년 주된 단시간 취업 사유	Eurostat, LFS
	2006년 기간제 근로자 비율과 2000-2006년 기간제 근로자 비율 변화	Eurostat, LFS
	2006년 EU-27개국의 임시직 취업 주요 사유	Eurostat, LFS
	2006년 EU-27개국의 업종별 기간제 근로자 비율	Eurostat, LFS
	2006년 25-49세 인구의 가구 유형별 분포	Eurostat, LFS
	2006년 한부모가구의 자녀유무별 취업 상태	Eurostat, LFS
	2006년 유배우 가구의 자녀유무별 취업 상태	Eurostat, LFS
	2006년 자녀(15세미만) 유무별 남녀 고용률	Eurostat, LFS
	2006년 자녀수별 남녀고용률	Eurostat, LFS
	2006년 자녀(15세미만) 연령별 남녀고용률	Eurostat, LFS
2006년 교육수준 및 자녀수별 여성고용률	Eurostat, LFS	
3. 유급 노동과 무급 가사노동 참여 및 시간 배분	2000-2007년 EU-27개국의 주당 근로시간 변화률	Eurostat, LFS
	2005년 EU 국가별 주당 무급, 유급 근로시간	EWCS
	2005년 국가군 및 성별 평균 각종 근로시간 분포	EWCS
	2005년 EU-27개국의 전일제/시간제 근로형태 및 성별 각종 근로시간 분포	EWCS
	2005년 성별 및 연령별 주당 무급 근로시간	EWCS
	국가군 및 성별 주당 아동 및 성인 들봄 시간	EWCS
	2005년 주당 근로시간대별 일·가정 양립 정도에 대한 평가	EWCS
2005년 국가별 일·가정 양립 정도에 대한 평가	EWCS	
4. 가족 책임과 들봄 서비스	미취학 보육서비스 형태(국가별)	OECD
	연령별 공식 및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률	Eurostat, EU-SILC 2006 data

154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지표명	자료원
	연령 및 이용시간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Eurostat, EU-SILC 2006 data
	자녀연령대별 공식 육아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Eurostat, EU-SILC 2006 data
	공식보육시설의 보육교사 1인당 0-3세 아동수	OECD
	미취학 보육시설 보육보조교사 및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OECD
	보육교사 자격 및 주요 근무시설	OECD
	미취학 보육교사 자격 및 주요 근무시설	OECD
	가구구성형태 및 아동연령별 공식보육시설 이용시간(주 평균)	Eurostat, EU-SILC 2006 data
	아동 연령 및 이용시간대별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률	Eurostat, EU-SILC 2006 data
	아동 연령별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주 평균)	Eurostat, EU-SILC 2006 data
	아동 연령별 육아전문가 및 조부모 육아시간(주 평균)	Eurostat, EU-SILC 2006 data
	25-49세 부부의 취업 형태별 육아 형태	Eurostat, LFS and ad hoc Module.
	65세 기준 남녀 기대수명, 1990년과 2005년	Eurostat (Demography)
	EU-27개국의 65세 이상 인구	Eurostat (Demography)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의 비율	Eurostat (Demography)
	노인부양비, EU-15개국과 EU-27개국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국가별 노인부양비	Eurostat (Demography)
	건강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의 개인적 돌봄 제공자	SHARE
	건강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독거 노인 중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 비율	SHARE
	25-49세 인구 중 환자, 장애 또는 노인 가족/친구 및 15세 이상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인구의 비율	Eurostat (LFS ad hoc module 2005)
	25-49세 인구 중 환자, 장애 또는 노인 가족/친구 및 15세 이상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인구의 취업상태별 분포	Eurostat (LFS ad hoc module 2005)
	25-49세 인구 중 환자, 장애 또는 노인 가족/친구 및 15세 이상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인구의 미취업 또는 추가 근로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Eurostat (LFS ad hoc module 2005)
	25-49세 인구 중 환자, 장애 또는 노인 가족/친구 및 15세 이상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인구의 근로시간 변경 의사	Eurostat (LFS)
5. 휴가와 가족 책임	모성휴가 기간	OECD, MISSOC database,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부성휴가 기간	OECD, MISSOC database,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법정 모성, 부성 휴가제도 현황	OECD, MISSOC database,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모성 수당	OECD

	지표명	자료원
	법정 부모휴가제도 현황	OECD, MISSOC database,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부모휴가 기간	OECD, MISSOC database,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출산 예정인 18세 이상 취업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의사 및 사용 사유	Eurobarometer Survey 59.1, 2004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출산 예정인 18세 이상 취업 남성의 부모휴가 비사용 사유	Eurobarometer Survey 59.1, 2004
	18세 이상 취업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의견	Eurobarometer Survey 59.1, 2004
	18세 이상 취업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	Eurobarometer Survey 59.1, 2004
	남성 근로자가 부모휴가를 사용한 사업체 비율	ESWT 2003-2004
	부모휴가 후 여성의 직장 복귀 현황	ESWT 2003-2004
6. 유연 근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사유	ESWT, 2004 - 2005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효과	ESWT, 2004 - 2005
	25-49세 남녀 전일제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	Eurostat, LFS
	25-49세 남녀 단시간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	Eurostat, LFS
	25-49세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	Eurostat, LFS
	미혼 및 편부모 가구의 전일제 여부별 주 평균 근로시간	Eurostat, LFS
	자녀 유무 및 부부 취업상태별 주 평균 근로시간	Eurostat, LFS
	25-49세 남녀 인구 중 비전형근로 취업자 비율	Eurostat, LFS
	25-49세 남녀 근로자의 자녀유무별 교대근무자 비율	Eurostat, LFS
	25-49세 남녀 근로자의 자녀유무별 야간근무자 비율	Eurostat, LFS
	25-49세 남녀 근로자의 자녀유무별 주말근무자 비율	Eurostat, LFS
	25-49세 남녀 취업자 중 가족사유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취업자 비율	LFS and ad hoc Module
	25-49세 남녀 취업자 중 가족사유를 위해 휴일과 특별휴가를 제외한 전일 휴가가 가능한 취업자 비율	LFS and ad hoc Module
	가족사유로 활용가능한 법정 휴가 제도	Eurofound, MISSOC
	돌봄 책임이 있는 25-49세 남녀 취업자의 근로시간 변경 의사	LFS and ad hoc Module
	25-49세 남녀 취업자 중 재택근무 취업자 비율	Eurostat, LFS
	기업의 일가족 양립 제도	Den Dulk, 'Work-family arrangements in organisations', 2001
	고용주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참여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고용주의 보육시설 도입 참여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업종 및 규모별 보육시설 설치율	ESWT, 2004-2005

〈부표 2〉 OECD Family database 수록 지표 및 한국 포함 여부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한국 포함 여부	자료원
1. 가족 구조	가족 및 아동	SF1 가족 규모와 구성	○	국가 인구조사와 EU통계처 인구주택총조사 와 설문지
		SF2 가족 내 아동	X	국가 인구조사와 EU통계처 인구주택총조사 와 ELFS(유럽노동력조사) 및 OECD 설문지
		SF3 아동의 거주 환경에 대한 추 가적인 정보	X	국가 인구조사와 EU통계처 인구주택총조사 와 ELFS(유럽노동력조사)와 학령기 아동의 보건 행태 조사(HBSC)
	출산 지표	SF4 출산율	○	UN과 EU통계처 인구통계, 각국 통계청
		SF4a 기대수명	○	UN과 EU통계처 인구통계, 각국 통계청
		SF5 첫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연령	○	UN과 EU통계처 인구통계, 각국 통계청
		SF6 혼외 출산율과 십대 출산율	○	UN과 EU통계처 인구통계, 각국 통계청
		SF7 무자녀	X	국가 인구자료, 다양한 국가별 자료원
	혼인 및 배우자 상태	SF8 혼인율과 이혼율	○	UN과 EU통계처 인구통계, 각국 통계청
		SF9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의 비율	X	인구조사, EU통계처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 아동 및 취업 상태	LMF1 고용 상태별 가족의 아동	X	ELFS(유럽노동력조사), 국가 서베이와 설문지
		LMF2 어머니 고용률	X	OECD 노동력통계DB
		LMF3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X	ELFS(유럽노동력조사)와 설문지
		LMF4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 파일	○	OECD 노동력통계DB
		LMF5 성별 임금 격차와 학력별 소 득 차이	○	OECD 소득DB
		LMF6 고용 성과의 성별 격차	○	OECD 노동력통계DB와 ELFS(유럽노동력조사)
	근로시간과 돌봄 시간	LMF7 성별 주당 통상 근로시간	○	ELFS(유럽노동력조사), 국가 서베이
		LMF8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 의 연령별 커플 가구의 근로시간	X	ELFS(유럽노동력조사), 국가 서베이와 설문지
		LMF9 자녀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싱글 가구의 근로시간	X	ELFS(유럽노동력조사), 국가 서베이와 설문지
		LMF10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X	법조항, 유럽노동환경 국가 서베이
		LMF11 통근 시간	X	시간사용조사(유럽통합시간사용조사(HETUS) 와 다른 국가 서베이)
		LMF12 일, 보살핌, 가사 소요 시간	○	시간사용조사(유럽통합시간사용조사(HETUS) 와 다른 국가 서베이)
3. 가족 및 아동 대상 공공 정책	유자녀 가족을 위한 보편적 조세/급여 지원	PF1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	OECD 사회복지지출DB
		PF2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	OECD 교육DB
		PF3 가족현금급여	○	OECD 수혜금과 급여 OECD 과세 급여
		PF4 조세/급여 체계의 성 중립성	○	OECD 수혜금과 급여 및 OECD 과세 급여
		PF5 아동 부양 체계	○	LIS 서베이/행정기록
		PF6 양육지원	—	National authorities
	아동 관련 휴가	PF7 부모휴가제도 주요 특징	○	Babies and Bosses, MISSOC, NOSOSCO, ISSA, and Moss and Korintus (2008)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한국 포함 여부	자료원	
4. 아동 성과	영유아 대상 공보육 및 교육	PF8 부모별 휴가 급여 사용률	X	ELFS(유럽노동력조사)와 행정기록	
		PF9 취업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수급권	○	제정법, Babies and Bosses, and Moss and Korintus (2008)	
		PF10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	OECD 사회복지지출DB	
		PF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률	○	Babies and Bosses, Starting Strong, OECD 교육DB	
		PF12 보육지원	○	OECD 수혜금과 급여	
		가족 형태 및 임금 수준별 보육수당과 순양육비 유형	PF13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	OECD Babies and Bosses and OECD Starting Strong
			PF14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	OECD Babies and Bosses and OECD Starting Strong
			PF15 방과후보육서비스	X	정부 기관
		아동 건강	CO1 영아사망율	○	OECD 보건 데이터
	CO2a: 저체중 출산		○	OECD 보건 데이터, WHO 지표	
	CO2b: 예방접종률		○	OECD 보건 데이터, WHO 지표	
	CO3 모유수유율		○	국가 서베이	
	CO4 질병 관련 통계: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	Diabetes Atlas, 세계 소아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조사(ISAAC)	
	CO5 10세 이하 아동의 비만		○	IOTF(국제비만특별조사)	
	CO6 15세 이상 아동의 성별 상습 흡연자		X	HBSC(학령기 아동 행태조사)	
아동 빈곤	CO7 가구유형별 소득 지위의 경향	○	OECD 소득분포DB		
	CO8 아동 빈곤	○	OECD 소득분포DB		
교육/문해	CO9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 교육의 평균기간(년)	○	OECD 교육DB		
	CO10 남녀 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분포	○	OECD 교육DB		
	CO11 10세 남녀 아동의 문해력 점수(Literacy scores)	X	IEA(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 PIRLS(국제읽기능력향상연구) DB		
	CO12 15세 남녀 아동의 문해력 점수(Literacy scores)	○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비교) DB		
	CO13 미취학미취업 청년층	X	OECD 교육DB		
사회 참여	CO14 15-29세 청년의 자원 봉사나 NGO 회원 참여	○	세계가치관조사와 2006 유럽사회조사		
	CO15 생애 첫 투표 참여률	○	IDEA, 선거비교연구(CSES)와 2006 유럽사회조사		
	CO16 십대 투옥률	—	선거비교연구(CSES)와 2006 유럽사회조사		
	CO17 청소년의 약물 남용	X	HBSC(학령기 아동 행태조사)		
	CO18 십대 자살	○	WHO		

주: 한국 포함 여부의 ○=해당 지표에 한국 자료 포함, ×=해당 지표에 한국 자료 미포함, —=미공개('10년 6월 현재)를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웹 페이지(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고경환 외, 2009; Adema. et. al(2009)를 바탕으로 구성.

〈부표 3〉 일본 「雇用均等基本調査」(2008)의 결과표 목록

결과표 명칭	
육아휴직	육아휴업제도의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최장육아휴업기간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취득가능회수별 사업장 비율
	1세이후의 육아휴업 취득요건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제도의 대상노동자 현황별 사업장 비율
	유기계약노동자의 육아휴업취득요건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중/휴업후의 노동조건의 명시방법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기간중의 회사, 공제회 등으로부터의 금전지급 유무 및 내용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기간중의 정기승급처리별 사업장 비율
	상여산정시 육아휴업기간처리별 사업장 비율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업기간처리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복직후 직장/직종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자의 직업능력유지, 향상을 위한 조치의 유무 및 내용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
	육아휴업자 비율
	육아휴업종료 후 복직자 및 퇴직자 비율
	취득기간별 육아휴업후 복직자 비율(여성)
	취득기간별 육아휴업후 복직자 비율(남성)
	취득기간별 육아휴업후 복직자 비율(남녀 계)
	육아휴업취득자가 있었던 당시 고용관리상황별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 내용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단시간근무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육아시 이용가능한 플렉스타임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를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소정의 노동의 면제)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사업장내 위탁시설)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육아에 필요한 경비 원조 조치)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의 각 제도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육아휴업에 준하는 조치)

결과표 명칭		
	육아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의 단축시간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의 단축시간분임금의 취급별 사업장 비율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단시간근무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육아시 이용가능한 플렉스타입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근로 시작 및 종료시간을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소정의 노동의 면제)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사업장내 위탁시설)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의 각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육아에 필요한 경비 원조 조치)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제도의 이용자 비율	
	가족간호 휴가	개호보험제도의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최장개호휴업기간의 제한 유무 및 최장개호휴업기간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의 취득회수 제한 유무 및 취득가능회수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제한 유무 및 대상자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제도 대상노동자의 상황별 사업장 비율		
유기계약 노동자의 개호휴업취득요건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중/휴업후의 노동조건의 명시조건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기간 중 회사, 공제회로부터의 금전지급 유무 및 내용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기간 중 정기승급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상여산정시 개호휴업기간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퇴직금산정시 개호휴업기간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복직후 직장/직종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자의 취업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조치 유무 및 조치 내용별 사업장 비율		
개호휴업자 비율		
개호휴업종료 후 복직자 및 퇴직자 비율		
취득기간별 개호휴업후 복직자 비율		
개호휴업취득자가 있었을 당시 고용관리상황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제도의 유무 및 최장이용기간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내용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 제도의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단시간근무제도)		

	결과표 명칭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 제도의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개호시 이용가능한 플렉스타입제도)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 제도의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근로 시작 및 종료시간을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 제도의 유무 및 최장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개호에 필요한 경비 원조 조치)
	개호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의 단축시간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단시간근무제도의 단축시간분임금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 제도의 이용자 유무별 사업장 비율
	개호를 위한 근무시간단축등의 조치 각제도의 이용자 비율
	가족의 개호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한 시간외 노동 제한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가족의 개호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한 심야업 제한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 휴가제도	자녀간호휴가제도의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제도의 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제도의 휴가일수 제한 유무 및 제한일수별 사업장 비율
	자녀 이외에 간호휴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제도의 대상노동자 상황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를 취득한 경우 임금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취득상황별 사업장 비율
	자녀간호휴가 취득자 비율 및 취득일수별 취득자 비율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한 시간외 노동제한 규정 유무 및 이용가능기간별 사업장 비율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를 위한 심야업 제한 규정 유무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 휴가제도 등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유무 및 취득가능일수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휴가를 취득한 경우 임금의 처리별 사업장 비율
	배우자출산휴가 이용자 비율
	재고용제도 유무별 사업장 비율

**일·가정양립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생산 방안 연구**

2010년 6월 인쇄
2010년 6월 발행

발행인 : 서 철 환

발행처 : 통계개발원

대전시 서구 월평2동 282-1 통계센터

전화 / 042-366-71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